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년 제1호

2016. 7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CONTENTS

I. 미국 / 캐나다 3

- 1. 미국 3
 - 가. 국가별보고서 관련 제안규정 발표 3
 - 나. 외국보험업자 간 재보험거래 시 소비세 과세 폐지 4
 - 다. 오바마 정부의 '2017년 예산안' 발표 5
 - 라.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13
 - 마. 오바마 대통령의 '법인세제 개편 방향' 발표 14
 - 바. 인버전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추가 규정 발표 21
 - 사. 국가별 고용창출세액공제(WOTC)를 위한 고용주 신고기한 재연장 22
- 2. 캐나다 24
 - 가. 과세 · 비과세 대상 종업원 차량 지원비용 한도액 인하 24
 - 나. 적격 외국인 고용주의 외국인 종업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제외 25
 - 다. 2016년 예산안 발표 26

II. 유럽 36

- 1. 그리스 - 부가가치세율 인상 36
- 2. 네덜란드 37
 - 가. 2016년 개정세법 발표 37
 - 나. EU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최종수익적소유자 등록 관련 법안 상정 40
 - 다. 특허박스 세법개정안 발표 41

3. 덴마크	42
가. BEPS Action 13의 이전가격문서화 채택	42
나. 배당세제의 개정	43
4. 러시아 - 비거주자에 대한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지침 발표	45
5. 룩셈부르크 - BEPS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 수용	46
6. 벨기에	46
가. 부가가치세의 면세점과 공급시기 등에 관한 개정	46
나. 유럽연합 법에 따른 개정	48
7. 스위스 - 국가별보고서의 시행을 연기함	49
8. 에스토니아 - 우버(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납세행정규정 및 시스템 구축 ..	50
9. 영국	51
가.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의 전환	51
나. 2016년 예산안 발표	54
다. 법인의 이자공제 제한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60
라. 이전가격에 대한 2차 조정규정(Secondary Adjustment Rule)도입을 검토	61
10. 이탈리아	62
가. 2016년 개정세법 발표	62
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대상 재화 확대	65
11. 터키 -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안 발표	66
12. 폴란드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General Anti- Avoidance Rule) 시행 예정	67
13. 프랑스 - 2015년 개정세법에 대한 수정법안 발표	68
14. EU	70
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조세회피방지 패키지 발표	70
나. EU의 부가세 단일시장 확립을 위한 부가세 실행계획을 발표	74
다. 현행 부가세 최저기준세율 유지 결정	75
15. OECD	76
가.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과세당국 간 협정 체결	76
나. BEPS프로젝트의 확대 참여를 위한 포용체계 발표	77

다. 국민연금기금을 조세조약상 설립국의 거주자로 취급하는 OECD모델 조세협약 개정안 발표	78
라. BEPS프로젝트 Action 6의 비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약혜택 부여 관련 협의문서 발표	78
마.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표준 전자양식 (XML Schema)을 발표	80
바. BEPS프로젝트 액션 13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과세당국간 다자협정에 6개국 추가 서명	81
사. 「Taxing Wages 2014~2015」 발표	82
아. BEPS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OECD이전가격지침서에 반영	83
자. BEPS프로젝트 다자간협약 관련 협의문서 발표	84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86

1. 뉴질랜드 - 통합개정법안 공개	86
2. 싱가포르	87
가. 2016 예산안 공개	87
나. BEPS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	89
3. 인도	89
가. 2016~2017 예산안 공개	89
나. 비상장증권에 대한 소득구분지침 공개	93
다. 조세회피 제보자에 대한 보상지침 공개	93
라. 외국법인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기준 공개	94
마. 모델 소비세법 공개	95
4. 일본	96
가. 2016 세법개정안 각의 결정	96
나.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	99
5. 중국 - 영업세에서 증치세로의 완전한 전환 결정 공개	99

6. 호주	100
가. 국가별 보고 지침 공개	100
나. 외국투자자들에게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도입	102
다. FATCA와 CRS 관련 금융계좌 정보교환에 대한 지침 공개	103
라. 완화된 이월결손금 공제규정 개정안 공개	104
마. 상원 경제위원회, 법인세회피에 대한 보고서 공개	104
바. 2016~2017 예산안 공개	106
사. 전자화폐에 대한 과세여부 답변 공개	109
7. 홍콩 - 2016~2017 예산안 공개	109



표목차

〈표 I-1〉 미국 국가별보고서 양식에 포함되는 내용	4
〈표 I-2〉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제 주요 개정방향(2012년, 2016년)	14
〈표 I-3〉 미국의 산업별 법인세 유효세율	16
〈표 I-4〉 고용주의 고용창출세액공제(WOTC) 신고기한 개정	22
〈표 I-5〉 캐나다의 비과세 차량지원 기준금액 개정내용	25
〈표 I-6〉 캐나다 소규모사업공제 신설규정 적용사례	30
〈표 II-1〉 2016년 네덜란드 개정 소득세율	39
〈표 II-2〉 영국의 디지털 세무행정시스템에 대한 로드맵	53
〈표 II-3〉 2016 예산안에 따른 영국의 소득구간	55
〈표 III-1〉 일본의 법인세율	96
〈표 III-2〉 일본의 지방 법인세 표준세율(소득기준의 경우)	97
〈표 III-3〉 일본의 이월결손금 공제율	97
〈표 III-4〉 일본의 소비세율	98
〈표 III-5〉 호주의 개인소득세율	108



그림목차

[그림 I-1] 미국과 OECD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1981년~2015년)	16
[그림 I-2] 미국의 일반법인과 도관회사의 유효법인세율(2015년)	17
[그림 I-3] 캐나다의 2016~2017년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6세 이하 1자녀 가정 시) ..	27
[그림 II-1] 영국의 인적공제와 유효세율	55
[그림 III-1] 호주의 향후 10년간 법인세율 변화	107

I 미국 / 캐나다

1 미국

가. 국가별보고서 관련 제안규정 발표

[조세동향 16-01호]

- 미국은 2015년 12월 21일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인 미국기업에 대해 OECD BEPS Action 13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안규정(proposed regulation)을 발표함¹⁾
 - 국가별 보고 양식은 미국 국세청이 작업 중에 있으며, OECD 권고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부 수정될 것임
 - 이 규정은 9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16년 중 최종규정이 발표될 것이며, 최종 규정 발표 이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미국 다국적기업의 직전회계연도 총수익이 8억 5천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가지며, 미국 내국세법 6038(a)²⁾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미국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는 외국법인은 보고대상 기업에서 제외함
- 국가별 보고 양식에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모회사인 미국기업의 계열사(constituent entity) 정보, 재무 및 종업원 정보, 추가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1) 미국 국세청(IRS) 및 재무부(Treasury), "Country-by-Country Reporting(REG-109822-15)"

2) 미국세법 6038(a)규정에서는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해당 미국법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표 1-1〉 미국 국가별보고서 양식에 포함되는 내용

계열사 정보	재무 및 종업원정보	추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관할권 정보 · 계열사 거주지 · 주요 사업활동 · 납세자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익(계열사 간 거래로 발생한 수익과 아닌 수익 구분) · 법인세 차감 전 손익 ·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총 납세액 · 누적이익(accumulated earnings) · 유형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의 순 장부가액 (net value) · 해당 과세관할권에서 일하는 정규직 사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출처에 대한 설명 · 내용변경에 대한 설명

자료: 미국 국세청(IRS) 및 재무부(Treasury), "Country-by-Country Reporting(REG-109822-15)"

- 국가별 보고 양식 제출기한은 OECD 권고사항과 달리 미국법인의 소득신고서 제출기한까지임
 - OECD 권고사항에서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외국보험업자 간 재보험거래 시 소비세 과세 폐지

[조세동향 16-01호]

- 미국 국세청은 2015년 12월 24일 외국보험업자 간 재보험거래로 지급하는 프리미엄에 대해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청 통칙을 발표함³⁾
 - 이는 최근 버뮤다 재보험회사인 'Validus'와 미 국세청의 소송에서 미 국세청이 재보험에 부과한 소비세를 환급하도록 한 미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결과를 고려하여 개정된 것임⁴⁾
- 외국보험업자의 재보험거래에 1%의 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기존의 국세청 통칙 (revenue ruling 2008-15)을 폐지하고 새로운 통칙으로 대체함
 - 단, 외국 재보험업자가 미국 내 보험회사로 취급되거나, 재보험거래로 지급받은 프리미엄이 미국 사업소득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소득세가 과세됨

3) Revenue ruling 2016-3

4) 버뮤다 재보험회사인 'Validus'가 외국 보험업자로부터 미국의 위험을 인수하는 재재보험(retrocession) 거래에 부과된 소비세가 부당하다며 낸 환급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음

다. 오바마 정부의 '2017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6-02호]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2월 9일 2017년 '2017년 예산안(FY2017)'을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함
 - 이번 2017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에서 제안되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은 다수의 제도를 다시 제안하고 있음
- 이번 2017년 예산안에서 제안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조세 개혁: 해외소득 과세 강화, 미국 내 사업장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존의 조세혜택 폐지 및 신규 조세혜택 부여
 -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조세혜택: 사업개시비용 공제한도 인상, 감가상각비용 공제한도 인상
 -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혜택: 특정 계층 신규고용기업에 세액공제혜택 확대, 커뮤니티컬리지·기술대학 졸업생 채용 시 세액공제제도 신규 도입
 - 기반시설투자 확대: 정부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채권, 비과세 채권의 신규 도입
 - 중산층 및 근로자 가계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자녀양육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고소득층 과세 강화: 자본이득세 최고세율 인상, 유산·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및 통합공제한도금액 축소, 소득세율이 33% 이상인 납세자의 공제금액 제한

1) 국제조세 개혁 조치

-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미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U.S insourcing) 이전하는 데 발생한 적격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할 것을 제안함
 - 현행 제도에서 해외인력을 아웃소싱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 내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내로 사업을 이전할 유인이 적음
 - 따라서, 해외인력을 아웃소싱하는 데 발생한 비용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내 사업이전 시 비용공제할 것을 제안함

- 미국 내 다국적기업의 해외소득에 19%의 세율로 즉시 과세할 것을 제안함
 - 현행 제도하에서 해외자회사 소득은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아, 부적절하게 과세 이연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제안한 것임⁵⁾
 - 해외소득은 해외자회사 및 지사소득,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포함됨
 - 향후 과세된 해외소득이 본국에 송환 시 추가적인 납세의무는 없음

- 과거 과세되지 않고 누적된 해외자회사(CFC) 소득에 14%의 세율로 한시적 과세할 것을 제안함
 - 이번 예산안에서 제안한 '다국적기업 해외소득의 19%세율 과세'를 시행하기 전 경과 규정임
 - 미국 내 다국적기업이 CFC에 이익을 유보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
 - 한시적 과세된 소득이 미국 내로 송금될 때 납부한 세액만큼 세액공제함

- 무형자산 이전거래를 통한 소득 이전행위를 제한하고자 무형자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함
 - 기존 무형자산의 범위에 납세자가 지배·통제하는 기타물품(금융·유형자산 제외)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기존 무형자산의 정의에는 인적자원(workforce in place), 영업권(goodwill), 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가 있음⁶⁾

- 보험회사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외국보험계열사에 재보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외국보험회사의 미국 내 계열사인 보험회사가 그룹 내 다른 외국 계열사와 재보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할 유인을 제공함
 - 외국보험업자가 발행한 재보험에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비용공제로 발생하는 세수손실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임

5) 해외자회사 소득은 미국 내 주주에게 배당형태로 지급될 때 과세되며, 미국 내로 송환되지 않더라도 Subpart F소득(주로 수동소득, CFC가 속한 국가와 경제적 연관성이 없는 소득),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 배당간주금액에 과세함. 이를 통해 과세이연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나, 과세되는 소득이 제한적임.

6) 미국 내국세법, IRC 936(h)(3)

- 미국 파트너십의 외국파트너가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지분취득자가 판매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할 것을 제안함
 - 현행 제도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미국 내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 하지만, 파트너십 지분양도를 미국 내 사업활동으로 본다는 규정(code provision)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번 제안에서 비거주자의 파트너십 지분양도는 파트너십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분배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사업활동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함
- 혼성계약(hybrid agreement)에 의해 어느 곳에서도 과세되지 않거나(stateless income), 이중 공제가 되는 경우의 이자, 로열티 지급액은 비용 공제를 부인할 것을 제안함
- 미국기업의 해외이전을 제한하고자 ‘인버전규정’의 2가지 개정안을 제안함
 - 지분율기준 수정: 기존의 지분율 80%기준은 50%기준으로 변경하며, 60%기준은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즉, 기존 미국회사 주주가 새로 설립된 모회사의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해도 미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 인버전거래 간주규정: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버전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함
 - 내국법인의 주식공정가치가 외국법인의 주식공정가치보다 큼
 - 합병법인의 모든 관계사(expanded affiliated group, 이하 EAG)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관리·통제됨
 - EAG가 해외모회사가 설립된 곳에서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2)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 소규모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감가자산 구입 시 발생하는 비용의 공제한도를 1백만달러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물가에 연동시킬 것을 제안함

7) 미국기업이 외국기업과 합병을 통해 기존의 미국 본사를 조세상 유리한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4년에 제정한 규정임. 기존 미국기업의 주주가 새로 설립된 해외모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 설립된 해외모회사도 미국법인으로 보며, 지분이 60~80%인 경우 새로 설립된 해외모회사의 일정소득을 과세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에서는 소규모사업자가 감가자산 구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5백만달러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투자금액이 2백만달러가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됨(phase-out rule)
 - 총투자금액기준은 2백만달러를 유지하기로 함
- 이번 제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소규모기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개시비용(start-up expenditures) 공제한도를 기존 5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사업개시비용은 사전조사비용, 사업체인수비용, 사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활동에 소요된 비용(물품구입, 광고, 종업원 교육 등)을 말함
 -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개시비용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데, 초과금액 기준도 12만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고용주가 대신 지급한 종업원 건강보험기여금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현재 종업원 수가 25인 이하인 고용주에 한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던 것을 50인 이하로 확대하고, 세액공제금액의 단계적 축소 기준인 종업원 수도 기존 10~20인에서 20~50인으로 상향조정함

3)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14%에서 1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현행 제도에서는 과거 3년간 적격 연구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율을 낮춰 6%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 영구화 및 신규제도 도입

- 고용창출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⁸⁾) 제도를 영구화할 것과, WOTC가 적용되는 장애인근로의 채용대기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함

- 군 제대 후 1년 이내에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에서 정한 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한 장애인군인을 고용주가 과정 수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 WOTC를 적용함
 - 현행 제도에서는 과정 수료 후 1년 이내에 장애인군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WOTC가 적용됨
- 장기적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대규모 실업은 해당 지역의 군부대가 철수하는 경우, 사업주가 회사를 철수하거나, 회사의 상당한 운영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임
 - 투자종목, 세액공제율, 금액한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와의 작업을 통해 향후 규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이미 도입된 ‘신시장세액공제(new market tax credit)’, ‘에너지사업 세액공제(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와 비슷하게 설계될 것임
 - 세액공제를 적용할 투자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해당 지역 경제발전단체(economic development agency)의 자문을 받을 것을 제안함
- 미국의 커뮤니티컬리지 또는 기술대학 졸업생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 1인당 5,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제안함
 - 이 제도는 저소득,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학생들이 대학의 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5백만달러를 각 주(州)에 인원기준(per capita basis)으로 할당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함
 - 세액공제 적용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적 요건(적격 대학, 고용인 요건)은 향후 미국 각 주의 담당부서와 협의할 것을 제안함
- 빈곤지역을 약속지대(promised zone)⁹⁾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신규고용하

8) WOTC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주가 적격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우, 첫째 임금지급액의 40%를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세액 공제하는 제도임

9) 현재 약속지대로 선정된 지역은 20곳이며, 2014년 1월 9일에 5곳, 2015년 4월 28일에 8곳, 2016년 3-6월 중 7곳을 발표할 예정임

거나,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할 것을 제안함

- 약속지대 거주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첫째 임금액의 20%를 3,000달러 한도로 세액 공제함
- 약속지대에 세법상 감가상각기간(recovery period)이 20년 미만인 유형자산을 설치하는 경우 1년에 100%의 감가상각 비용공제를 허용함

5) 클린에너지 및 지역성장을 위한 세액공제 영구화

- 클린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할 것을 제안함
 - 재생전기에너지 생산 세액공제제도 영구화
 -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상업용 빌딩(energy-efficient commercial building)의 비용공제제도 영구화
 - 제2차 바이오연료(second generation biofuel) 생산관련 세액공제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
 - 첨단에너지제조(advanced energy manufacturing project) 관련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허용
 - 기존에 전기차 제조에 세액공제하던 것을 첨단차량 제조(advanced technology vehicle)에 대한 세액공제로 대체
- 저소득지역사회를 장려하기 위한 '신시장세액공제(new market tax credit)'를 영구화하고, 2019년 이후로 매년 5백만달러의 예산을 할당할 것을 제안함
 - 신시장세액공제는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entity; CDE)의 적격지분(qualified equity investment; QEI)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9%만큼 7년 동안 세액 공제하는 제도이며, 2019년 일몰될 예정임

6) 기반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채권 도입

- 기반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패스트 포워드 채권(Fast Forward Bond)'의 도입을 제안함
 - 기존의 재건축채권(Build America bond)¹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방채임

10) 재건축채권은 자금난에 봉착한 지방정부를 돕기 위해 2009년 '미국 경기부양 및 재투자법(America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ARRA) 2009'에 의해 신규 도입된 채권으로서, 주정부의 사회간접자본건설을 위해 채

-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패스트 포워드 채권발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의 28%를 지원하며, 예산자동삭감(sequestration) 대상에서 제외함
 - 비과세채권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예상금액과 이자수익 과세로 인한 세입액 간 균형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률을 28%로 정함
- 패스트포워드 채권은 주로 정부 차원의 기반시설 건립 프로젝트 자금조달,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입금의 상환, 일시적인 정부의 운전자본 조달에 이용될 것임
- 새로운 비과세 사적사업채권(private activity bond)인 ‘적격 공공기반시설 채권(Qualified Public Infrastructure Bonds; QPIBs)’의 도입을 제안함
 - QPIBs로 수행되는 프로젝트는 주정부가 운영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 건립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하며, 2017년부터 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함

7) 중산층 및 근로자 가계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자녀양육비용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지원액을 인상할 것을 제안함
 - 현행 제도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용의 35%를 1자녀의 경우 3,000달러, 2자녀 이상인 경우 6,000달러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함
 - 조정된 총소득(AGI)이 1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을 2,000달러당 1%씩 20%까지 감소시킴
 - 2017년 예산안에서는 공제율이 감소하는 조정된 총소득 기준을 15,000달러에서 120,0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50%의 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도는 동일함
- 현행 교육비용 지원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제도를 환급 가능한 교육비용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¹¹⁾로 대체하고, AOTC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권을 발행한 경우, 주정부가 지급할 이자비용의 35%를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채권이며 2010년까지 발행됨. 현재 미국 정부의 예산자동삭감(sequestration)으로 인해 재건채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삭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이자율을 감소시킴(미국 2017년 예산안, p. 71)

11) 대학교육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용의 2,000달러까지 100%, 다음 2,000달러까지 25%를 2,500달러 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제도임

- 2016년 예산안에서 제안된 AOTC제도는 2015년 12월 18일 'PATH Act'에 의해 입법되었으며, 이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2017년 예산안에서 제안한 것임
- 현재 대학교육비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제도는 평생학습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학자금대출 이자비용공제가 있음
- AOTC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무상장학금(Pell grants)을 받은 경우 총소득, AOTC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가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한도액을 2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적용대상 납세자 연령은 기존 25~64세에서 21~66세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 맞벌이부부에게 연 1만달러를 한도로 소득의 5%만큼 세액공제하는 '맞벌이부부 추가 세액공제(second earner tax credit)'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공동신고 혹은 부부개별신고를 선택하더라도, 각 개인별로 신고했을 때보다 높은 세부담을 질 수 있는 문제(marriage penalty)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함

8)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

- 소득세율이 33% 이상 적용되는 고소득 납세자의 소득공제금액 제한을 제안함
- 조정된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각종 공제항목(이자비용 공제, 고용주제공 건강보험공제, 퇴직연금 불입액 등) 합계액이 총과세소득의 28%를 넘지 않도록 제한함
- 고소득자의 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20%에서 24.2%(고소득자의 순투자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3.8% 포함 시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추가적으로, 개인적 유형자산(가구, 옷 등, 미술품류 제외) 이전 시 1인당 10만달러까지 공제를 허용하며, 배우자 간 자산이전 시 주거용 주택은 50만달러까지, 다른 물품은 20만달러까지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것을 제안함
- 조정된 총소득이 가계기준 1백만달러 이상(부부개별신고 시 5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 공정분배세(fair share tax; FST)를 부과하도록 하는 버핏룰 시행을 제안함

- 공정분배세 산출세액(tentative FST)을 계산한 후,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최소 소득세와 비교하여 초과하는 금액이 납부할 공정분배세가 됨
 - 공정분배세 산출세액은 조정된 총소득의 30%임
 - 최소 소득세는 최저한세, 순투자소득에 대한 3.8% 과세분, 근로소득세가 포함됨
- 현행 유산세, 증여세, 세대생략이전세의 세율 및 공제한도를 2009년 기준에 맞춰 최고 세율을 인상하고, 통합공제한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함¹²⁾
 - 최고세율은 유산세, 세대생략이전세, 증여세(gift tax) 모두 2009년 당시의 45% 수준으로 인상함
 - 면제금액(exclusion amount)도 2009년 당시의 수준, 즉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경우 350만달러, 증여세의 경우 100만달러로 인하함
 - 면제금액은 물가연동(indexing for inflation)에 따라 조정되지 않음

9) 기타

- 과도한 위험부담(risk-taking) 투자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회사에는 그들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7bp(basis point) 수수료(fee)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동 수수료의 부과대상은 자산규모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ies), 금융중개회사(financial broker-dealers) 등이며, 해외 기업의 미국 자회사도 포함됨

라.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조세동향 16-02호]

- 2016년 2월 18일부터 비거주자가 미국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함¹³⁾

12) 미국의 유산·세대생략세는 2010년에 잠정폐지되었다가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RUIRCA)’에 의해 다시 도입되었으며, 폐지 전 제도보다 최고세율이 인하되고, 통합공제한도금액도 증가함

13) 미국 세법 제1445(a), 미국 국세청, “Instructions for Form 8288”

- 이는 2015년 12월 18일 제정된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에 포함된 내용으로, 법 개정 이후 60일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인상된 세율인 15%가 적용된 것임
- 양수인이 주거이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5%의 세율을 적용함
 - 양수인이 주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이 30만달러 초과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10% 원천징수세율을 계속 적용함
 -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이 30만달러 이하인 경우 양수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제외됨

마. 오바마 대통령의 ‘법인세제 개편 방향’ 발표

[조세동향 16-04호]

- 2016년 4월 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제 개편방향(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을 발표함
 - 이번 발표에서는 미국 법인세제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2012년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방향’의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한 것이며, 미국 2017년 예산안에서 제안된 내용도 다수 포함됨
- 법인세제 주요 개정방향은 조세제도 단순화, 기술개발 및 제조업 강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조세체계 강화, 소규모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 및 납세신고 단순화임

〈표 1-2〉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제 주요 개정방향(2012년, 2016년)

개정방향	2012년 개편내용	2016년 개편내용
넓은세원, 낮은세율 체계 구축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8%) · 각종 조세감면제도 정비 * 후입선출법 폐지, 석유·가스업종 시추비용 일시상각 폐지, 보험상품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항공기에 대한 가속상각(5년) 폐지 등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8%) · 이자비용 공제제한 · 법인세법상 허점 제거 및 각종 조세지출 축소 * 후입선출법 폐지, 석유·가스업종 보조금 폐지, 가속상각비용 공제 제한 등

〈표 1-2〉의 계속

개정방향	2012년 개편내용	2016년 개편내용
제조업 및 혁신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에 대한 지원 확대(실효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 · 연구개발(Research and Experiment) 세액공제제도 영구화 및 공제율 확대(14%→17%) · 클린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에 대한 지원 확대(국내 생산활동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실효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 · 연구개발(Research and Experiment) 세액공제제도 영구화 및 공제율 확대(14%→18%) · 클린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구화
국내투자 활성화 및 해외소득 과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세율 국가 소재 해외자회사의 해외 유보소득에 최저한세(Minimum Tax) 부과 · 기업의 해외진출비용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국내복귀 기업의 이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 신설 · 자산·소득의 해외이전 유인 축소(예) 해외투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 손금 산입 제한(당해 해외투자에 따른 소득 발생시점에서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세율 국가 소재 해외자회사의 해외유보 소득에 최저한세(세율 19%) 부과 및 현재 까지 유보된 소득에 14%의 세율로 일시적 과세 · 다국적기업의 그룹회사 간 부채거래 시 이자비용 공제제한 · 인버전 거래 제한 규정 마련
소기업 조세 감면 확대 및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에 대한 투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50만→100만달러) · 현금주의 회계 적용대상 소기업의 범위 확대(총수입 500만달러→1,00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에 대한 투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50만→100만달러) · 현금주의 회계 적용대상 소기업의 범위 확대(총수입 1,000만달러→2,000만달러) · 초기 창업 투자비용 세액공제 한도액 상향(5천달러→2만달러)

자료: 기획재정부,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내용과 시사점」, 2012.02.24. 인용하여 내용 수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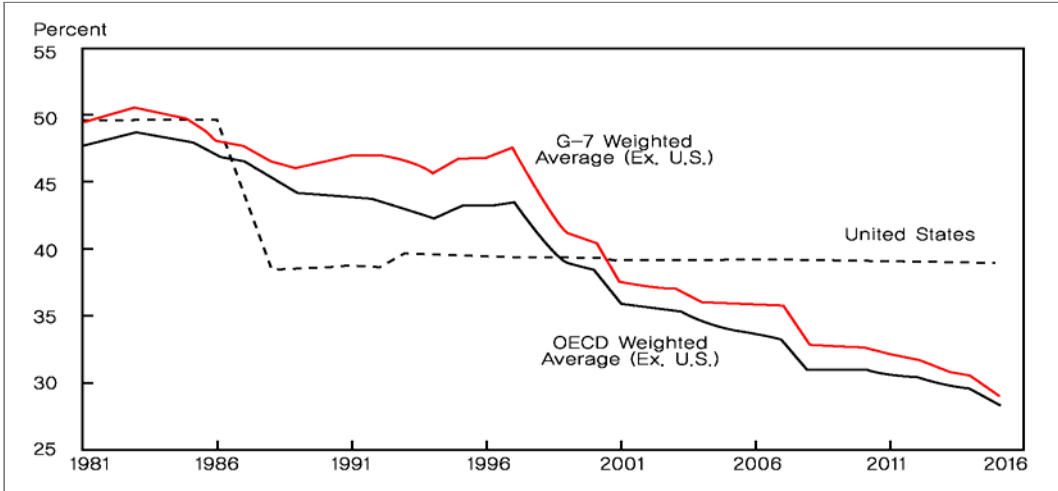
1)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

가) 높은 법인세율로 인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 이전

- 미국의 법인세율은 1986년 법인세법의 대대적인 개편 이후 OECD국가와 G7(미국 제외)의 평균 법인세율보다 낮았으나, 이후 다른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로 2016년 현재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은 높은 수준임(그림 I-1 참조)
- 미국 내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 외국기업과 합병을 통해 미국 본사를 해외로 이전, 이자비용 과다공제(earnings stripping), 과도한 이전가격 적용 등의 방법으로 조세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1-1] 미국과 OECD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1981년~2015년)

(단위: %)



자료: 미국 재무부,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2016, Figure 6.

나) 일부 산업에 집중된 조세지원제도로 인한 신규 기술개발 위축

- 현행 세제지원제도는 특정 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기술개발을 지연시키며 결과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원인도 제공함
- 예로, 장기적으로 대체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석탄연료, 채광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산업 간 법인세 유효세율에 큰 차이가 있음

[표 1-3] 미국의 산업별 법인세 유효세율

(단위: %)

산업	유효 법인세율	산업	유효 법인세율
전기	14.5	보험업	23.1
리스	17.7	금융업(finance)	23.1
운송, 창고업	18.6	정보통신업	24.2
광산	21.6	소매업	27.9
농업, 임업, 어업	22.0	서비스업	29.4
부동산업	22.4	건설업	30.3
제조업	22.4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	23.3

자료: 미국 재무부,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2016, 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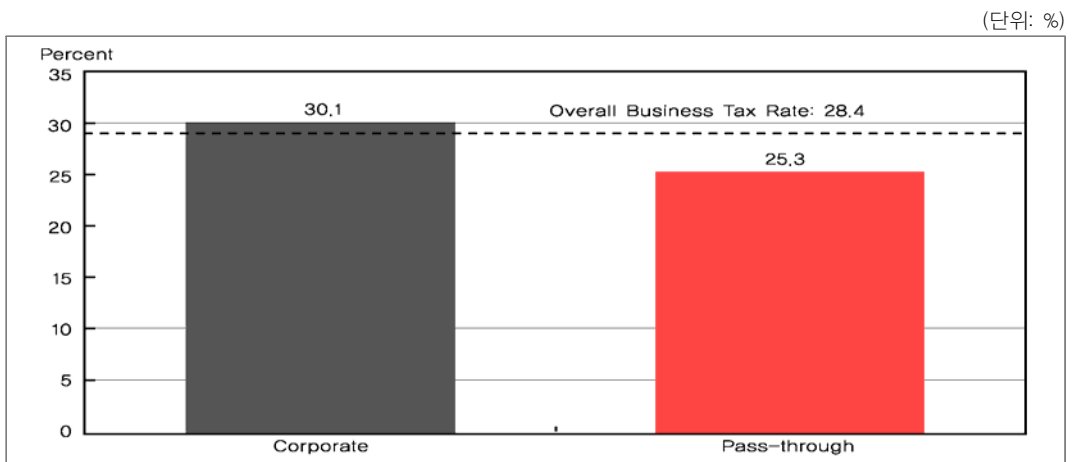
다) 지분증권보다는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위험 증가

- 현행 법인세제도는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이자비용이 공제되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유인을 제공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과다부채차입으로 인한 파산위험을 증가시킴
- 부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 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비용은 손금산입이 되는 반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조달 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유인을 제공함

라) 기업형태별 다른 세무 처리로 기업 설립형태 왜곡

-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법적 형태에 따라 법인세제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제도상 우대혜택을 받는 도관회사 설립을 선호하며, 그 결과 기업 설립형태를 왜곡시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함
- 도관회사 설립 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조합원의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함
- 실제로 2015년 기준 일반기업형태인 C회사의 유효세율은 30.1%인 반면 도관회사의 유효세율은 25.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관회사 소득이 총기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5%에서 2012년 60%로 증가함¹⁴⁾

[그림 1-2] 미국의 일반법인과 도관회사의 유효법인세율(2015년)



자료: 미국 재무부,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2016, Figure 3.

14) 미국 재무부,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2016, Figure 4.

2) 법인세법 개정방향

- 오바마 대통령의 법인세법 개정방향은 조세제도로 발생하는 산업 간 세부담 차이, 자금 조달방법 및 법인설립 형태 왜곡,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음

가) 세율인하 및 세원확대, 법인세제도상 허점 및 불필요한 보조금 제거

-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입감소를 충당하기 위한 주요 방안을 제시함
- 자산의 가속상각 허용금액을 감소시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를 충당시키며, 많은 국가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자산의 가속상각 허용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켜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보다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 부채자금 조달로 발생한 이자비용의 공제를 일정비율로 제한하여 부채와 지분증권을 통한 자금조달방법의 중립성을 증가시키며, 과다차입(over leverage)할 동기를 감소시킴
- 법인세제도상 허점 및 조세지출 축소¹⁵⁾를 위한 주요방안을 제시함
 - 후입선출법 제거: 국제적 기준에 맞춰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제도를 단순화시킴
 - 석유(oil)·가스·석탄연료(fossil fuel)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석유·가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며, 석탄연료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 동종 상품의 교환을 통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이익 성격, 측정방법 개정

나) R&D, 클린에너지, 제조업 지원 강화

- 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R&D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오래되고 복잡한 R&D 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자 함

15)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미국 2017년 예산안」에 기술되어 있음

- R&D 공제비용 결정하는 2가지 방법 중 오래된 방법은 폐지하고, 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며 공제율은 기존 14%에서 18%로 인상함
-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석유·가스·석탄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석탄연료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구화함
- 제조업은 미래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국내 생산활동에 대한 공제율을 10.7%로 확대하여 법인세 최고 실효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함

다) 국제조세제도 강화

- 미국 내 소득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고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가지 방안을 제시함
 - 첫째, 향후 발생하는 미국 다국적기업 해외소득에 대해 미국 내 송환 여부에 상관없이 19%의 세율로 과세함
 - 둘째, 해외유보소득에 19% 세율로 과세하기 전, 이전에 발생한 해외소득에 14%의 세율로 일회성 과세함
 - 셋째, 다국적기업의 연결그룹 간 부채거래 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함
 - 넷째, 외국회사와 합병을 통해 미국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인버전 거래를 제한함
 - 다섯째, 국경 간 무형자산 이전관련 규정 강화, 해외자회사 과세소득 범위 확대
 - 제안내용 대부분은 2016년, 2017년 예산안에서 제안된 내용임
- 미국 다국적기업이 해외소득을 본국에 송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발생하는 해외소득에 19% 세율로 과세함
 -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소득을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아 부적절하게 과세이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현재까지 미국에 송환되지 않고 해외에 보유한 소득에 14%의 세율로 일회성 과세함
 - 해외소득에 19%의 세율로 과세하기 전 과세되지 않은 해외유보소득에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 다국적기업의 그룹회사 간 부채거래를 통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다국적기업의 그룹회사 간 부채거래 시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함
 - 미국 사회사의 이자소득과 그룹 전체 이자비용에서 다국적기업이 소유한 미국 사회사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함

- 미국 기업이 본사 소재지를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인버전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 저세율국으로 모회사 소재지를 이전하였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활동을 미국에서 수행하는 경우 미국 기업으로 보아 과세하며, 인버전거래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 규정을 마련함

- 라) 소규모 사업자 과세제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 소규모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격투자비용 한도금액을 현행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 한도로 상향함

-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에 대한 비용 및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주의 장부기장이 허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대상을 확대함
 - 현행 세법에서는 발생주의 회계기장을 요구하나, 현금주의 회계기장을 할 경우 장부기장이 간편하여 소규모사업자의 행정부담 및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음
 - 총매출액(gross receipts)이 1천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현금주의 회계기장을 허용했으나, 2천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 기준을 상향함

- 소규모 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창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함
 - 초기창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5천달러 한도로 세액공제하던 것에서 2만달러 한도로 세액공제함

- 고용주가 부담하는 종업원 건강보험료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소규모사업자 대상을 확대함
 - 현재 종업원 수가 25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종업원 건강보험료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종업원 수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바. 인버전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추가 규정 발표¹⁶⁾

[조세동향 16-04회]

- 미국 재무부는 2016년 4월 4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기업과 합병을 통해 모회사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인버전거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발표함
 - 2015년 11월 19일 ‘상당한 영업활동 판단 기준’, ‘지분을 판단 기준’을 개정하였으나, 규제를 강화하여 발생 가능한 인버전 거래를 방지하고자 추가적 규정인 임시규정과 제안규정을 발표함
 - 제안규정, 임시규정 모두 2016년 4월 4일부터 적용됨
- 제안규정에서는 실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거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국적기업의 그룹회사 간 부채거래를 주식거래로 간주할 것을 제안함
 - 해외 모회사의 이자수익은 저세율국으로 이전하고, 미국 자회사가 지급한 이자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제안됨
 - 세법상 주식거래로 간주 시 이자비용 공제를 받지 못하고 배당금 지급으로 간주됨
 - 제안규정은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그룹회사 간 부채거래에만 적용되며, 대규모 기업은 상장 여부, 총자산, 총수익 기준으로 판단함
 - 거래 당사자 중 1기업이 상장기업이거나, 그룹회사 전체의 총자산이 1억달러를 초과하거나, 연간 총수익이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다국적기업으로 봄
- 임시규정에서는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시, 인수 이전 3년 동안 다른 미국법인을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이전에 미국법인이 취득한 외국법인의 지분은 인버전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지분을 계산 시 제외함
 - 미국 기업을 여러 개 인수하는 연쇄합병거래(multiple domestic acquisition)를 통해 지분을 분산하여 인버전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지분율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¹⁷⁾

16) 미국 재무부(<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jl0404.aspx>)

17) IRC 7874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미국기업과 합병 후 모회사가 되고, 기존 미국 기업의 주주가 새로운 모법인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미국 기업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외국기업이 미국 기업을 여러 개 취득하여 지분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인버전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지분율 기준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 국가별 고용창출세액공제(WOTC)를 위한 고용주 신고기한 재연장

[조세동향 16-06호]

- 미국은 2016년 6월 10일 고용창출세액공제(WOTC)를 위한 고용주 신고기한 혜택을 3개월 연장시키고, 혜택이 적용되는 고용기간도 확대함¹⁸⁾
 - WOTC는 취업취약계층 고용 시 임금지급액의 일부를 고용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WOTC는 2014년 일몰되었으나 2015년 12월 「세금증가방지법(PATH Act)」을 통해 2019년으로 일몰이 연장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혜택을 제공함
- 이번 공지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취업취약계층 고용 시 2016년 9월 29일까지 신고를 허용하는 혜택을 부여함
 - 원칙적으로 고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9일까지 신고해야 하나¹⁹⁾, 2016년 3월 국세청 공지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2016년 6월 29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음
 - 장기실업자는 2016년부터 WOTC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고용주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신고기한 혜택이 제공됨

〈표 1-4〉 고용주의 고용창출세액공제(WOTC) 신고기한 개정

구분	2016.03 국세청공지 (Notice 2016-22)		2016.06 국세청공지 (Notice 2016-40)	
	고용기간	신고기한	고용기간	신고기한
장기실업자	2016.01.01. ~ 2016.05.31	2016.06.29	2016.01.01. ~ 2016.08.31	2016.09.29
그 외 취업취약계층	2015.01.01. ~ 2016.05.31		2015.01.01. ~ 2016.08.31	

18) 미국 국세청, Notice 2016-40, 2016.06.10.

19) WOTC신청서(Form 8850)를 미국의 각 주별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WOTC 혜택을 받음

[참고]

■ 고용창출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란?

- 은퇴군인(retain veterans) 또는 저소득 가정구성원,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경우 임금지급액의 25% 또는 40%를 고용주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1996년 도입됨

WOTC 적용대상 취업취약계층

- 1) 실업 재향군인(장애군인 포함)
- 2) 가구수혜원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받는 가족의 구성원
- 3)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
- 4) 기업유치, 지역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역의 거주자 (Designated Community Resident)
- 5) 특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 6) 전과자
- 7) 생활보조금(Supplementary Security Income(SS)) 수혜자
- 8) 여름청년취업프로그램(summer youth program)에 참가하는 학생

WOTC 세액공제율 및 한도

- 고용창출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고용주가 고용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따라 상이함

	TANF 수혜자 가족 ¹⁾	은퇴군인		그 외 ²⁾		
고용 시간	400시간 이상	12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	400시간 이상	12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	400시간 이상	
공제율	1년차: 40% 2년차: 50%	25%	40%	25%	40%	
공제한도 (단위: 달러)	2년간 9,000	·푸드스탬프수령자	1,500	2,400	1,500 (Summer youth 참가자의 경우 750)	2,400 (Summer youth 참가자 1,200)
		·장애군인				
		- 장애인보상금 수령 하면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3,000	4,800		
			6,000	9,600		
		·실업군인				
		- 실업기간 최소 4주	1,500	2,400		
		- 실업기간 최소 6주	3,500	5,600		

주: 1) 장기 가구원조(Temporary Assistance Needy Families)를 18개월 이상 받는 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2) 푸드스탬프 수령자, 특정지역 거주자, 재활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범죄자, 생활보조금 수령자

WOTC 제도 개정연혁

- WOTC제도는 1996년 도입되고 2013년에 일몰되었으나, TIPA, PATH Act에 의해 2019년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됨
- 2015년 9개월 이상 실직 중인 장기실업자도 고용취약계층 대상에 포함함
- 2016년 3월, 6월 고용창출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고용주 신고기한을 연장함

구분	발표시기	내용
TIPA (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	2014.12	· 2013년 일몰된 WOTC제도의 폐지일자를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
PATH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2015.12	· WOTC제도 2019년까지 연장 · 장기실업자(9개월 이상 실직, 실업급여 받는 자)도 고용대상 범위에 추가(즉, 장기실업자를 2016.01.01. 이후 고용 시 WOTC혜택 부여)
Notice 2016-22	2016.03	· 장기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취약계층 고용 시 WOTC혜택을 2015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개정 · 따라서, 2015.01.01.~2016.05.31.까지 고용하고 2016.06.29.까지 신고 시 세액공제 허용
Notice 2016-40	2016.06	· WOTC를 위한 고용주 신고기한 혜택 3개월 연장 · 원칙: 고용일 이후 다음달 29일까지 신고한 경우 WOTC혜택 · 혜택: 고용주가 2016.09.29.까지 신고 시 세액공제 허용 (장기실업자의 경우 2016.01.01.~2016.08.31.동안 고용 시, 기타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2015.01.01.~2016.08.31.까지 고용 시)

자료: 미국노동부 (https://www.doleta.gov/business/incentives/opptax/eta_default.cfm), 2016.06.29. 접속, 미국 국세청 공지 (Notice 2016-22, Notice 2016-40)

2 캐나다

가. 과세·비과세 대상 종업원 차량 지원비용 한도액 인하

[조세동향 16-01호]

- 캐나다 재무부는 2015년 12월 24일 2016년부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영비용의 과세 및 비과세 한도액을 각각 킬로미터(km)당 0.1캐나다달러씩 인하할 것을 발표함²⁰⁾

- 종업원이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용 차량 일지를 제출하면 최초 5천km까지는 km당 0.54캐나다달러, 5천km를 초과하는 운행구간은 km당 0.48캐나다달러로 계산하여 해당 지급금액을 비과세함
- 2015년에는 5천km까지 km당 0.55캐나다달러, 초과구간은 km당 0.49캐나다달러였으나 2016년부터 0.1캐나다달러씩 인하됨

〈표 1-5〉 캐나다의 비과세 차량지원 기준금액 개정내용

(단위: 캐나다달러)

	비과세대상 차량 지원금액	
	~ 5천km	5천m 초과
2010~2011	0.52	0.46
2012	0.53	0.47
2013~2014	0.54	0.48
2015	0.55	0.49
2016	0.54	0.48

자료: 캐나다 재무부(<http://www.cra-arc.gc.ca/tx/bsnss/tpcs/pyrll/bnfts/tmbl/llwnc/rts-eng.html>)

- 회사소유 차량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차량 운영비를 회사에서 전액부담한다면 해당 비용을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데, 기존 km당 0.27캐나다달러에서 2016년부터 0.26캐나다달러로 인하함

나. 적격 외국인 고용주의 외국인 종업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제외

[조세동향 16-01호]

- 캐나다 국세청은 2016년 1월 12일 적격 외국인 고용주가 적격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주 인증 프로그램’을 발표함²¹⁾

20) 캐나다 재무부(<http://www.fin.gc.ca/n15/15-090-eng.asp>)

21) 캐나다 국세청, “Application for Non-Resident Employer Certification-RC473,” 2016.01.12 및 pwc, “New Non-Resident Employer Certification program: Payroll withholding relief for foreign employers with frequent business travellers to Canada,” 2016.01.15.

- 이는 비거주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캐나다 예산 안에서 제안됨
- 캐나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를 통해 2016년 2월 1일까지 비거주자 고용주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 의무가 제외되도록 함
- 적격 외국인 고용주 및 외국인 종업원은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이며, 적격 외국인 종업원은 과세기간 중 캐나다 근무일자가 45일 미만이거나, 캐나다에 90일 미만 거주한 자임
- 만약 적격 외국인 고용주가 파트너십인 경우, 파트너십 소득의 90% 이상이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에게 분배되어야 함
- 적격 외국인 종업원이 캐나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30일 전에 고용주는 캐나다 국세청에 '적격 외국인 고용주 신청서(RC437)'를 제출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부터 원천징수 의무가 제외됨

다. 2016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6-03회]

- 캐나다 재무부는 2016년 3월 22일 중산층 지원 확대를 주 목표로 하는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함²²⁾
- 이번 예산안은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국제조세, 소비세로 나누어 세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번 예산안은 294억캐나다달러 적자예산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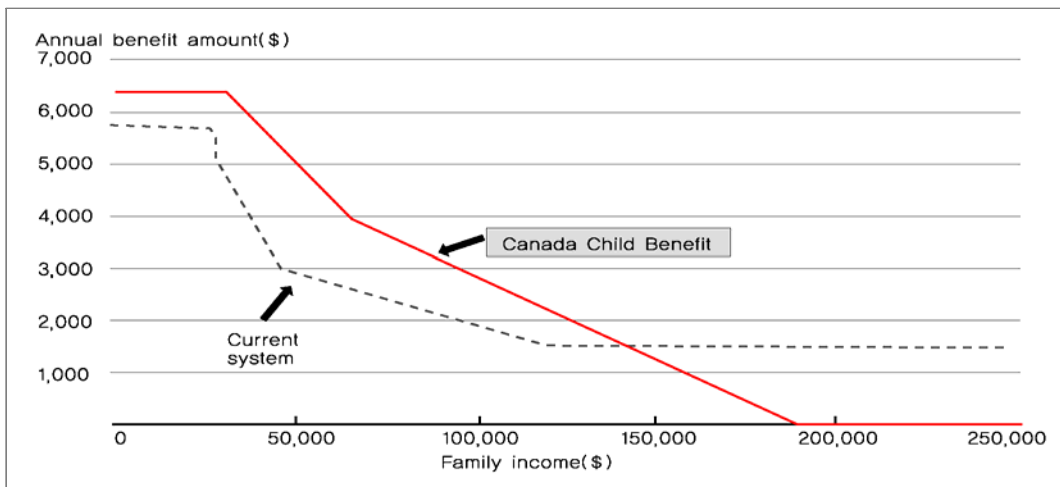
1) 개인소득세

가) 기존 제도를 통합한 새로운 자녀장려금 제도 도입

22) 캐나다 재무부, "Growing the Middle Class" 및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http://www.budget.gc.ca/2016/docs/plan/toc-tdm-en.html>)

-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2개의 자녀장려금 제도²³⁾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자녀장려금제도를 도입함
- 새로운 자녀장려금제도 도입 시, 연간 순소득이 14만캐나다달러 이하인 가정의 경우 지급받는 자녀장려금이 현행 제도에 비해 증가함
 - 자녀 1명당 최대 6,400캐나다달러(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또는 5,400캐나다달러(자녀가 6세~18세 미만인 경우)를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함
 - 가족의 연간순소득(net income)이 3만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한도금액을 지급받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지급액이 감소됨

[그림 1-3] 캐나다의 2016~2017년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6세 이하 1자녀 가정 시)



자료: 캐나다 재무부, '2016 예산안,' Chart 1.2.A, p. 59

나) 고소득층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소득분할규정 폐지

- 2016년부터 고소득층 납세부담 경감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과세소득을 이전하는 소득 분할규정(income splitting credit)을 폐지함
 - 현행 제도에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과세소득을 최대 5만캐나다달러(납부세액은 2천캐나다달러 한도)까지 배우자에게 이전을 허용함

23) 현재 캐나다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anada Child Tax Benefit; CCTB)와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지급하는 통합자녀양육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운영중임

다) 캐나다 북부 거주자의 거주비용 소득공제금액 증액

- 캐나다 정부는 북부 거주자의 난방비 등 높은 거주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주거 비용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1일당 8.25캐나다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함

라) 특정 뮤추얼펀드 주식매입액의 세액공제 계속 적용

- 개인투자자가 중소벤처기업에만 투자하는 뮤추얼펀드(LSVCC)²⁴⁾의 주식매입 시, 주식 매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계속 적용함
 - 위 세액공제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유치를 위해 1980년부터 도입되었음
 - 2013년 예산안을 통해 세액공제율 15%를 2015년에 10%, 2016년에 5%로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2016년 예산안을 통해 제도의 존치를 발표함

마) 교육자의 교육관련 지출비용 세액공제 신규 도입

- 초·중·고 교사 또는 유치원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개인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최대 1천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함
 - 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있거나 학위가 있는 자여야 하며, 교육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 교육활동 지출비용으로는 과학실험도구, 미술용품, 문구용품, 게임·퍼즐, 소프트웨어, 보충교재 구입비용 등이 있음

바) 자녀의 체육·미술 과외비용 세액공제 축소 후 폐지

- 2016년에 자녀 체육·미술 과외비용의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축소한 이후 2017년부터 폐지함
 - 체육과외비용은 1,000캐나다달러에서 500캐나다달러로 축소하며, 미술과외비용은 500캐나다달러에서 200캐나다달러로 축소된 이후 2017년부터 폐지됨

24) LSVCC는 Labour-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s의 약자로, 주로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도록 강제된 뮤추얼펀드 형태의 회사이며, 노동조합이 투자운영주체를 선임할 수 있음

사) 교육기관 등록비용, 교재비의 세액공제제도 폐지

- 2017년부터 교육기관 등록비용 및 교재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이며, 2017년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기간 및 금액 한도 없이 이월공제 가능함
-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캐나다 장학금(Canada Student Grants) 수혜 대상을 확대함

야) 뮤추얼펀드 내 다른 종류의 주식 교환 시 처분이익 인식

- 투자자가 뮤추얼펀드 내 종류가 다른 주식 간 교환 시 공정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와 관련한 이익을 인식함
- 현행 규정에서는 주식처분으로 간주하지 않아 뮤추얼펀드 투자자는 다른 종류의 주식 교환 시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를 누림
 - 뮤추얼펀드신탁 또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교환 거래 시 주식처분으로 간주하여 관련된 이익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남
-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됨

자) 연계채권(linked note) 처분이익을 이자수익으로 간주

- 투자자가 만기일 이전 연계채권을 처분하여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과세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만기일 이전 연계채권 처분 시 처분이익을 이자수익으로 간주함
- 캐나다는 자본이득 과세소득의 50%만 과세하고 있어, 만기 전 처분하는 것이 만기 시 이자수익을 지급받는 경우보다 납부세액이 감소함
-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됨

2) 법인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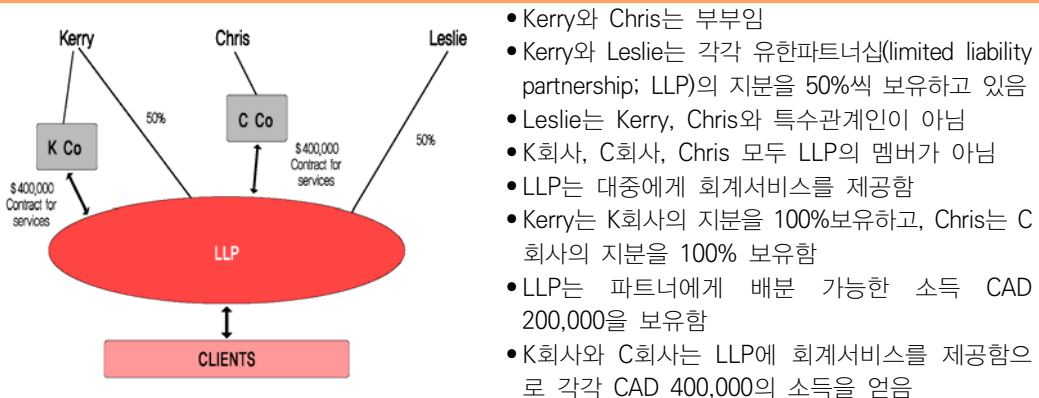
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감세율의 단계적 인하 폐지

- 2015년 예산안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감세율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10.5%의 경감세율을 계속 적용함
- 경감세율은 2016년에 기존 11%에서 10.5%로 인하되었으며, 2017년에 10%, 2018년에 9.5%, 2019년에 9%로 인하할 예정이었음

나) 소규모사업공제의 과다적용 배제를 위한 규정 신설

- 소규모사업공제를 과다적용받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규정을 신설함²⁵⁾
 -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이하 “CCPC”)이 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경우, CCPC의 주주를 파트너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소규모사업공제를 최대한도로 적용받음
 - CCPC가 파트너인 경우 CCPC의 파트너 지분율만큼 소규모 사업공제 한도가 적용되나, 위의 경우 CCPC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므로 50만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소규모사업공제가 과다 적용됨
 - CCPC는 파트너십과 서비스계약을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파트너십의 소득을 분배받을 수 있음
- CCPC가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1)파트너십의 멤버가 CCPC 또는 CCPC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2)CCPC가 파트너십에 서비스 및 자산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파트너로 간주하도록 함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CCPC가 실질적 파트너는 아니더라도 파트너로 간주하여 CCPC의 주주가 보유한 파트너십 지분율만큼 소규모사업공제를 적용함

〈표 1-6〉 캐나다 소규모사업공제 신설규정 적용사례



25) 캐나다 소규모사업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 제도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에 한해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500,00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경감된 법인세율(10.5%, 일반 법인세율 15%)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표 1-6〉의 계속

구분	현행규정	개정규정
Leslie	과세소득은 CAD 100,000임 ¹⁾	좌동
Kerry	과세소득은 CAD 100,000임 ¹⁾	좌동
K회사	납부세액은 CAD 42,000 (과세소득 CAD 400,000에 경감세율 10.5% 적용함 ²⁾)	납부세액은 CAD 48,750 (과세소득 CAD 400,000중 250,000은 10.5%세율 적용, 150,000은 일반세율인 15%세율 적용 ³⁾)
C회사	납부세액은 CAD 42,000(상동)	납부세액은 CAD 60,000 (소규모사업공제 적용받지 못함, CAD 40만×일반세율 15% ⁴⁾)

주: 1) LLP소득 CAD 200,000에 각 파트너의 지분율 50%를 적용한 금액이며,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됨

2) CAD 500,000을 한도로 소규모사업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CAD 400,000에 경감세율인 10.5%가 적용됨

3) K회사가 실질적인 LLP의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K회사는 Kerry와 이해관계가 있고, LLP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설규정에 의해 K회사도 파트너로 간주함. 파트너의 경우 파트너 지분율만큼 소규모사업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공제 한도금액 CAD 500,000에 파트너 지분율 50%만큼 소규모사업공제가 적용됨

4) C회사 또한 Kerry와 이해관계가 있고, LLP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C회사도 파트너로 간주됨. C회사의 주주인 Chris는 파트너십 지분이 없으므로 소규모사업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자료: 캐나다 재무부, 2016년 예산안 중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p.29

또한, CCPC가 서로 연관된 다른 CCPC의 사업소득으로부터 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투자소득은 소규모사업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현행 규정에서는 다른 CCPC의 사업소득에서 지급받는 투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규모사업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 세율로 과세됨

위 규정들은 예산발표일인 2016년 3월 22일부터 적용됨

다) 클린에너지²⁶⁾ 관련 자산의 가속상각 허용

가속상각을 통해 전기차량충전소와 전기에너지 저장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해당 자산을 연간 30% 또는 50%의 비율로 가속상각함

26) 태양열이나 전기처럼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말함. 태양, 바람을 에너지로 전환한 재생에너지, LNG, 매립지가스(landfill gas) 등이 포함됨

- 전기차량충전소가 제공하는 충전량이 90kw 이상이면 50%, 10~90kw인 경우 30%의 가속상각을 허용함
- 전기에너지 저장시설의 에너지전환 효율성(round-trip efficiency)이 50% 이상이면 30%, 그 외의 경우 50%의 가속상각을 허용함
- 이 규정은 예산발표일인 2016년 3월 22일부터 적용됨

라) 생명보험금 수령액의 자본배당계정 및 조정취득원가 포함 금지

- 생명보험금을 자본배당계정(capital dividend account) 또는 조정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명보험금의 해당 계정 산입을 금지함
- 자본배당은 주주가 납입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비과세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액을 자본배당계정에 산입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 파트너의 지분처분 시 처분대가와 조정취득원가의 차액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액을 조정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처분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 규정은 예산발표일인 2016년 3월 22일부터 적용됨

마) 무형자산 구입비용 공제제도 단순화

- 기존 무형자산 구입비용 공제제도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형자산 구입비용의 75%를 연간 7%로 공제하던 것에서, 구입비용 전액의 5%로 상각하도록 개정함
- 현행 제도에서는 무형자산 구입비용의 75%는 누적적격자본(Cumulative Eligible Capital; CEC)에 누적되고, 누적금액에서 7%만큼 공제함
- 개정된 제도에서는 무형자산 구입비용 전액이 새로운 누적계정에 누적되고, 누적금액을 연간 5%로 상각함
-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경과규정으로 2016년까지 누적된 CEC에 대해서는 10년간 7%로 상각함

3) 국제조세

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규정 도입 및 일부 액션플랜 이행계획 발표

- 캐나다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규정을 신설함
 - 직전회계연도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수익액(consolidated group revenue)이 750만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를 가짐
 -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이며, 2016년 회계연도부터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캐나다는 OECD BEPS프로젝트 중 일부 액션플랜을 이행할 것을 발표함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 중 특수관계인 규정에 국제기준 적용
 - 조세조약관련 BEPS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다자간이행협정(multilateral instrument)기준 작업에 참여
 - 회원국 간 유해조세제도 관련 '세법해석 사전회신 내용(tax rulings)²⁷⁾'의 자발적 정보 교환 이행

나) 외국법인의 주식처분 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 명확화

- 외국법인이 보유한 캐나다법인의 지분을 다른 캐나다법인에 양도 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입자본을 초과한 처분금액(이하 “배당간주금액”)에 대해 비과세함
 -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캐나다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캐나다기업이 매수하는 경우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과세를 면제함
 - 외국법인이 보유한 캐나다기업의 주식양도 시, 납입자본을 초과한 처분금액은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캐나다법인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은 기업구조를 재조직하여, 주식양도 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1)외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캐나다법

27) APA(이전가격사전결정제도)나 ATP(사전답변제도) 등과 같이 특정 납세자나 납세자그룹의 과세상황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나 조언을 말함.

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2)주식 매수법인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과세면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 이 규정은 예산발표일인 2016년 3월 22일부터 적용됨

다) 비거주자의 중개인을 통한 로열티소득 과세회피 방지

- 캐나다 거주인이 중개인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지급 시 상호직접거래(back-to-back rule)로 보아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개정함
- 캐나다 거주인이 저세율국에 중개인을 두고 중개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4) 소비세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의료물품 확대 및 규정 명확화

- 인슐린펜, 인슐린바늘, 카테테르를 영세율 적용 의료물품목록에 포함하고, 미용·기술 목적 화장품은 과세, 치료·회복목적 화장품은 면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이 규정은 예산발표일인 2016년 3월 22일부터 적용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콜센터 수출용역 범위 축소

- 통신망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자에게 기술 및 고객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거주자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함
- 기존에는 기술 및 고객지원 용역 수출 시, 용역제공을 받는 자가 기업·개인 여부에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출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기업인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 이 규정은 예산발표일인 2016년 3월 22일부터 적용됨

다) 기부금액의 부가세 과세대상 금액 축소

- 기부자가 기부대가로 자선단체로부터 자산·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부가세를 과세하던 것에서 제공받은 자산·서비스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함

- 이 규정은 예산발표일인 2016년 3월 22일부터 적용됨

라) 난방 목적으로 사용한 연료에 대해서만 소비세 면세

- 거주용 주택, 빌딩 등과 같은 공간을 난방하는 데 소비한 연료에 대해서만 소비세 (excise tax)를 면제하며, 교통수단의 전기 생성을 위해 사용한 연료의 소비세 면세규정을 폐지함
-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됨

II

유럽

1 그리스 - 부가가치세율 인상

[조세동향 16-05호]

- 그리스 의회는 7월 1일부터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23%에서 24%로 인상²⁸⁾하는 개정안을 승인함
 - 그리스 의회는 국제 채권자들과 협의한 재정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이를 통해 4억~5억유로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국제 채권자들과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7억유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난 4월에 논의함
 - 이번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19%였던 2010년 이후로 두 번째 세율 인상임
 -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는 대상은 포장된 식품, 애완동물 식품, 청량음료, 대중교통, 택시운송 등이며, 가정용 전력, 교육, 수도 등은 제외함
- 또한, 정부는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인상할 예정이며, 일부 섬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의 30% 경감규정은 7월 1일로 폐지함
 - 6%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도서, 잡지, 신문에 대해서도 인상할 예정임
 - 그리스의 두 번째 섬 그룹(시로스 섬, 타소스 섬, 안드로스 섬, 티노스 섬 등)에 대하여 적용되던 부가가치세의 30% 경감규정은 폐지됨
 - 이미 그리스의 첫 번째 섬 그룹(산토리니 섬, 로도스 섬, 스키아토스 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30% 경감규정은 2015년 10월 1일에 폐지되었음

28) IBFD(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05-26_gr_1.html) 2016.05.23, 접속

2 네덜란드

가. 2016년 개정세법 발표²⁹⁾

[조세동향 16-01호]

- 2016년 개정세법(Tax Plan 2016)은 2015년 12월 22일 네덜란드 상원(Eerste Kamer)을 통과하여 12월 30일 정부에서 공식 발표됨

1) 법인세

-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비거주자인 주주 및 네덜란드 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 등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도입, 국가별보고서 등 이전가격문서 의무화, 공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이 있음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대한 EU Directive(2015/12)에 따라 네덜란드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네덜란드 조합의 원천징수의무 사항이 개정됨
 - 네덜란드 소재 법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가 네덜란드 법인을 보유하는 주된 이유가 조세회피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는 네덜란드에서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함
 - 기존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던 네덜란드 조합(cooperative)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함
- OECD BEPS Action 13의 지침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네덜란드에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과 함께 국가별보고서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함
 - 직전년도 기준 그룹 총매출액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집단에 속한 네덜란드 법인은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을 제출해야 함
 -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그룹 총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29) Netherlands - Tax Plan 2016, Bill to amend Tax Plan 2016 and Bill on other fiscal measures gazetted(30 Dec. 2015), News IBFD.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음

- 법인명과 주된 사업활동
- 매출액 및 근로자 수
-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 세전 이익/손실과 법인세납부액
- 유형자산 현황 등

- OECD의 Common Reporting Standard와 EU Directive(201/07)에 따라 네덜란드 금융회사는 해외 거주자의 은행잔고 등 특정 금융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기존 세법상 정부가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공기업은 과세대상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일부 항만운영자와 의과대학을 제외한 공기업의 경제적 활동으로 창출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단, 공기업의 조직개편(reorganization)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면제 됨

2) 소득세

-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각종 세액공제 한도 증가를 통한 개인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네덜란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출국세 과세이연 등이 있음
- 일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기존 42%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을 40.4%로 인하함
 - 52%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구간의 기준금액을 57,585유로에서 66,421유로로 상향 조정함

〈표 II-1〉 2016년 네덜란드 개정 소득세율

(단위: 유로, %)

과세표준	세율
~19,822 이하	36.5
~ 33,589 이하	40.4(기존 42)
~ 66,421 이하(기존 57,585)	40.4(기존 42)
66,421 초과	52

- 개인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기본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고령세액공제, 저소득 근로배우자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시킴
 - 기본세액공제 최대 공제한도는 2,203유로에서 2,242유로로 상향
 - 근로세액공제 최대 공제한도는 2,220유로에서 3,103유로로 상향
 - 고령세액공제는 1,119유로에서 1,730유로로 상향
 - 저소득 근로 배우자 세액공제는 1,119유로에서 1,730유로로 상향

- 네덜란드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국하는 시점에 주식양도소득세 형식으로 과세되던 기존 출국세(exit tax)에 대하여 10년간 과세이연 또는 면제를 적용함
 - 기존 네덜란드 출국세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네덜란드 법인의 과점주주(네덜란드 법인 주식의 5% 이상 소유)가 출국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개정된 세법은 이러한 출국세를 출국일로부터 10년간 유예하고, 10년간 네덜란드 법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거나 10년간 해당 법인 잉여금의 90%를 초과하여 배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세를 면제함

3) 기타 세목 개정사항

- 기타 세목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정, 비거주자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인상 등이 있음
- 자녀당 증여세(gift tax) 면제 한도를 상향 조정함(2017년부터 적용)
 - 자녀당 증여세 면제 한도를 기존 52,752유로에서 100,000유로로 상향 조정함

- 증여세는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주거지의 취득, 유지, 개보수 등에 사용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융자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증여 당시 자녀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네덜란드에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완화함
 - 비거주자가 지방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보아 가장 낮은 자동차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비알코올 음료와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함
 - 경감 소비세율이 적용되던 과일 및 야채주스와 광천수에 경감세율이 아닌 일반 소비세율인 100리터당 8.83유로를 적용함
 - 담배에 대한 소비세가 85.74유로/kg에서 99.25유로/kg으로 인상됨

나. EU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최종수익적소유자 등록 관련 법안 상정³⁰⁾

[조세동향 16-03호]

- 유럽연합(EU)의 제4차 자금세탁방지법(the Fourth Europea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에 따라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6년 2월 10일 네덜란드 법인의 최종수익적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 EU의 제4차 자금세탁방지법은 모든 EU 회원국이 2017년 6월 26일까지 각 국가에 소재한 단체의 최종수익적소유자를 등기하는 제도를 입법하도록 함
- 최종수익적소유자를 등기하여야 하는 네덜란드 단체는 2007년 상업등기법(2007 Commercial Register Act)에 따라 등기된 법인으로 하며 대상이 되는 최종수익적소유자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단체 지분의 2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개인으로 함

30) KPMG (<https://www.meijburg.com/news/letter-to-parliament-regarding-the-contours-of-the-ubo-register>)

다. 특허박스 세법개정안 발표³¹⁾

[조세동향 16-06호]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6년 5월 19일 OECD BEPS프로젝트(액션5)의 권고사항에 따른 특허박스(patent box) 개정 법안을 발표함
 - 특허박스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동 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9월 네덜란드 예산안에 포함되어 2017년 1월 1부로 시행될 계획임

- 동 개정안은 지적재산권 소득에 적용하는 기존의 경감세율 5%를 유지하되, 조세특례 대상 적격자산의 범위를 기존 규정보다 엄격하게 정의함
 - 적격자산을 (i)소프트웨어, (ii)특허권 또는 품종특허권(plant variety right), (iii)의약품 유통 라이선스, (iv) 상기 적격자산 사용의 배타적 권리로 한정하고 해당 자산의 인증 획득을 의무화함
 - 기존 특허박스규정은 특허권과 품종특허권을 획득한 자가 개발지적재산권 외에도 네덜란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가 다소 넓었음
 - 다만,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기존에 획득한 인증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허박스 특례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규정을 둠
 - 소규모 납세자는 직전 5년간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창출된 누적 소득이 3,750만유로 미만(개별 납세자 기준)이고 해당 납세자가 소속된 기업그룹의 직전 5년간 누적 매출 총액이 2억 5천만유로 미만인 납세자로 함

- 동 개정안은 OECD 권고에 따라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을 채택함
 - 연계접근법에 따른 적격 지적재산권 소득(조세특례 대상 소득)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음

$* \text{적격 지적재산권 소득} = \frac{\text{적격 연구개발비용} \times 1.3}{\text{총 연구개발비용}} \times \text{적격 지적재산권 소득}$
--

31)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Dutch-Government-issues-consultation-on-proposed-amendments-to-Dutch-innovation-box-regime>

- 적격 연구개발비용은 납세자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비특수 관계자에게 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은 포함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함
- 총연구개발비용은 적격 연구개발비용에 적격 지적재산권 취득비용과 관계사 위탁 비용을 포함함
- 적격 지적재산권 소득은 사용료, 자본이득 등 적격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을 의미함

3 덴마크

가. BEPS Action 13의 이전가격문서화 채택

[조세동향 16-01호]

- 덴마크 의회는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3에서 제안하는 이전가격문서화를 채택함³²⁾
 - 현행 적용되고 있는 덴마크의 이전가격문서규정은 이번에 채택된 OECD 이전가격문서화로 대체됨
- 덴마크 이전가격문서화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 세부적인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임
 - 전 세계 매출이 최소 56억크로네(DKK)이고 덴마크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은 덴마크 세정당국에 연간 국가별보고서(CbCR)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모회사의 세무상 거주지가 덴마크가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CbCR은 덴마크에서 제출되어야 함
 - 다국적그룹에 속한 한 회사가 덴마크에 있고, 다국적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CbCR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 있는 경우

32) 덴마크 국세청 :

<http://www.skm.dk/love/lovforslag/2015-16/forslag-til-lov-om-aendring-af-kattekontrolloven,-arbejdsmarkedsbidragsloven,-kildeskatteloven,-ligningsloven-og-pensionsbeskatningsloven>

- 다국적그룹에 속한 한 회사가 덴마크에 있고, 다국적그룹의 CbCR이 자동적으로 교환되지 않는 경우
- 제안될 법안은 매출, 세전 이익, 납부세액, 자본구성, 종업원, 유형자산 등에 대한 신고 범위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³³⁾
- CbCR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종 모회사가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7년부터 적용될 것임
- CbCR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나. 배당세제의 개정

[조세동향 16-04호]

- 덴마크 정부는 자회사가 분배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경영참여소득면제(The participation exemption)와 그 외 배당세제에 관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³⁴⁾
- 이번 개정안은 덴마크의 배당과세체계가 EU의 ‘설립의 자유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³⁵⁾로, 지난 2월 23일에 의회에 제출한 초안에서 몇 가지가 수정되었음
- 경영참여소득면제의 적용범위와 원천징수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배당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 정부는 세무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관할국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경영참여소득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함
- 덴마크에 소재하는 지주회사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로부터 분여 받는 배당과 지분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는 경영참여면제를 시행하고 있음

33) Tax analysis, 2016.01.11, p. 123

34) Tax analysts, 2016.04.04, p. 35

35) 「주요국의 조세동향」 15-10의 덴마크 참조

- 현재 경영참여소득면제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범위는 유럽연합이나 덴마크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관할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은 기존의 통상적인 조세조약요건에 조세정보교환요건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경영참여소득면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 덴마크는 전통적 조세피난처와 잠재적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45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
 -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관할국³⁶⁾에 소재하는 자회사가 부여한 배당은 경영참여소득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 법인세율(22%)로 과세함
- 경영참여소득면제의 대상이 아닌 국외회사나 덴마크 법인이 개인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현행 27%에서 22%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경영참여소득면제는 국외회사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아니하나, 경감세율은 수익적 소유자의 해당 여부와 관련없이 적용됨
 - 경감된 세율은 비(非)-EU의 주주에게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EU의 법인들에 대해서는 2007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이 될 것임
- 투자펀드, 단위형 신탁(unit trusts) 등의 국외 투자자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외 투자자가 덴마크의 원천징수세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 현행 투자펀드, 단위형 신탁 등은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받는 과세대상임
 - 배당에 갈음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지분율에 비례하는 청구권으로 현금을 부여받는 경우 등은 과세 목적에서 배당으로 간주될 것임
 - 배당간주규정은 투자펀드, 단위형 신탁 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거나 상환청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적용됨
 - 개정안은 5월 또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회피방지규정은 2월 23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힘

36) 보츠와나,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우루과이와 바누아투 등이 이에 해당됨

4 러시아 - 비거주자에 대한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지침 발표³⁷⁾

[조세동향 16-06호]

- 러시아의 재무부는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전가격조정(Transfer Price Adjustments) 규정의 적용대상과 조정범위에 대한 지침을 5월 10일에 발표함
 - 재무부는 이전가격조정과 관련된 러시아세법 105.14조, 105.3조, 105.8조에 대하여 지침(Guidance letter 03-01-18/28673)을 발표함

-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비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거래는 적용대상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러시아 세법에 의해 이전가격조정을 할 수 있음
 - 즉, 발생한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전가격조정의 목적에 따라 러시아 세법 105.14조를 적용하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거래를 세무당국이 인지할 수 있게 됨
 - 기존의 러시아 세법 105.14조는 규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한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이전가격조정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 따라 납부세액 혹은 세무상 결손금에 대하여 조정함
 - 이전가격조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러시아 세법 105.3조 6항에 따라 신고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세무상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이전가격조정의 대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품 혹은 용역의 조정된 가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가액으로 12월 31일 이후에 과대 계상된 결손금 및 과소계상된 납부세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조정되는 이전가격은 시장가격과 상이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및 결손금 조정을 위해 세무 목적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격의 조정은 기존 상거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러시아 세법 105.8조는 러시아 세법 105.3조의 이전가격조정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적용되는 이전가격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대응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함

37) No. 03-01-18/28673, 2016.05.10. (<http://www.klerk.ru/doc/444868/>, 2016.06.30. 최종접속)

5 룩셈부르크 - BEPS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 수용

[조세동향 16-01호]

-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3에서 제안하는 ‘국가별보고서’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
 - 룩셈부르크는 2014년 10월 29일에 베를린 성명을 통해 조기 적용 국가(Early adopter)로 합류하게 됨
 - 이행사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국가별 사업내용과 법인세, 종업원 수,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매년 CbCR을 신고하여야 함
 - 룩셈부르크 대사관 주최로 OECD 파리 본사에서 개최된 ‘국제조세와 OECD의 BEPS에 관한 회의’에서 CbCR의 수용 의사를 밝힘
- 룩셈부르크는 기업의 기밀을 보장하고,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보고서를 일관되고 신속히 시행할 것이나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아니함³⁸⁾
 - 재무장관은 CbCR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인 자체의 조세문제와 같은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쟁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재무장관은 다국적기업의 CbCR를 관련 국가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

6 벨기에

가. 부가가치세의 면세점과 공급시기 등에 관한 개정

[조세동향 16-01호]

- 부가가치세의 면세점과 공급시기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2015년 12월 6일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음

38) 룩셈부르크 관보, <http://www.gouvernement.lu/5646957/26-gramegna-mission>

-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을 인상하는 개정안과 부가가치세의 적용, 공공기관 공급에 대한 현금주의(Cash-based regime)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벨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5,000유로에서 25,000유로로 인상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부가가치세의 면세점 인상안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EC)의 승인으로 제정되었음
-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가가 청구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을 재개함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거나 대가가 청구될 때 혹은 지불될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과될 수 있음
 - 이 중 ‘대가가 청구될 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가가 청구되는 경우 공급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어 2013년에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음
 -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때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가가 청구될 때 혹은 지불될 때로 공급시기를 볼 수 있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대가 청구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임
 - 재화나 용역의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대가가 청구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는 공급일의 다음달 15일에 부과될 것임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가가 지불된다면, 대가 지불일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임
- 매입자납부제(매입자 부담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reverse charge)³⁹⁾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주의로 과세함
 - 현금주의에 따른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급받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는 매출세액에 대한 자금 부담이 없음

39) 공급자 간 수차례 거래를 함으로써 부가세를 탈세하는 회전목마형 부가세 탈세 등 일정 유형의 부가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 납부 의무를 공급자에서 고객으로 변경하는 제도(주 EU 대사관: http://missiontoeu.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0878&seqno=1110341&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나. 유럽연합 법에 따른 개정

[조세동향 16-02호]

- 벨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유럽연합 법(EC law)의 규정을 위배한 세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의 배당공제 체계가 자본이동의 자유원칙을 위배하였으며, 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용역의 자유이동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결하였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거주회사와 비거주회사에 적용하는 배당공제의 차이가 ‘자본의 자유이동(free movement of capital)’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결함
 - 거주자에게는 경영참여 소득면제(the participation exemption)⁴⁰⁾와 저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비거주회사의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음
 - 벨기에 거주회사의 주주가 수령한 배당에 대해 1.699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최소 120만유로의 지분가치이며, 10% 이하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에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이러한 배당규정의 차이는 위법하다고 2012년 7월 12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함
-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거주 모회사에 지급된 배당에 대해서도 1.699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유럽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2013년 7월 28일 이미 위배된 규정에 대한 환급은 이루어졌으며, 이번 세법개정에서 입법되었으며 적용대상에 대하여도 명시함
 - 유럽경제지역이나 정보교환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설립된 모회사
 - EU 모자회사 법(EU parent subsidiary directive)에 나열된 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는 모회사
 - 배당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때, 지분율이 10% 미만이며 최소 취득가치는 250만유로로 지분참여한 모기업
 - 개정된 원천징수세는 1월 7일에 지급되거나 수령한 배당에 적용될 것임

40)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함

- 유럽재판소는 벨기에의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이 자국의 금융기관·펀드에만 적용되는 것은 용역의 자유이동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혜택은 연간 최대 940유로를 한도로 기여금의 30%를 세액 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⁴¹⁾
 - 벨기에의 개인소득세율은 25~50%로 과세됨
 - 자국에 설립된 금융기관·펀드의 연금 저축에 대해서만 세금인하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유럽경제지역(EEA)⁴²⁾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혜택을 배제함
-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유럽경제지역에 설립된 금융기관과 펀드에서 지급하는 개인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을 확대함
 - 유럽경제지역에 설립된 국외 금융기관에 의한 지급금에 대해서도 납세자는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조세감면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외 금융기관 등은 새로운 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7 스위스 - 국가별보고서의 시행을 연기함

[조세동향 16-04호]

- 스위스는 지난 1월 27일에 국가별보고서의 자동교환과 다자간협약에 서명하고, 2016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 2018년부터 자동교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직전 사업연도 매출총액이 9억스위스프랑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스위스에 제출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별보고서의 시행을 위해 2016년 상반기에 국가별보고서와 관련한 법안을 제정하고, 선택적 국민투표와 의회의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41) TAX SURVEY(2015), Federal Public Service FINANCE(벨기에 재무성), P. 52
(http://finance.belgium.be/sites/default/files/downloads/TS2015_V01_entire.pdf)

4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유럽연합(EC)으로 이루어진 유럽통합시장임

- 그러나, 4월 13일에 국가별보고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절차의 복잡성과 제출대상 요건의 재검토로 인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⁴³⁾
- 법안 제정을 위한 절차 및 국민투표의 시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제정된 법에 따라 2017년 말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냄
- 또한, 현행 제출대상 기준인 9억스위스프랑은 Action13에서 권고한 기준인 7.5억유로를 2015년 1월 1일 기준의 환율로 적용한 점이 지적됨
 - 즉, 당초 취지와 달리 제출시점의 환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과거 기준환율의 적용으로 인해 제출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는 의회에 최종 법안을 제출 이전에 국가별보고서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7월 13일까지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부터는 자동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즉, 그룹의 회계연도말의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므로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정보교환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음

8 에스토니아 - 우버(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납세행정규정 및 시스템 구축

[조세동향 16-05호]

- 에스토니아는 우버와 같은 공유형의 운송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규정과 더불어 납세행정규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함
- 정부는 이미 2015년 10월에 우버의 현금 없는 결제(Cash-free) 서비스와 국세청의 납세신고체계 연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납세행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⁴⁴⁾
 -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한 잠재적 수익창출 가능성에 주목하여 우버를 정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새로운 납세행정은 우버(디지털 플랫폼)를 통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의 세금 신고절차를 간소화함

43) <http://www.pwc.com/gx/en/tax/newsletters/pricing-knowledge-network/assets/pwc-Switzerland-cbcr-draft-law.pdf>

44) 에스토니아 국세청
<http://www.emta.ee/eng/etcb-and-uber-collaborate-seeking-solutions-development-sharing-economy>

- 우버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전자와 승객의 운송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함
- 우버와 과세당국은 전문 서비스기록, 예상 비용, 운전자 기타 정보 등에 대한 전체 정보를 과세당국에 실시간으로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예정임⁴⁵⁾
- 에스토니아 정부는 우버에 대한 일반 규정과 납세행정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국제적으로 첫 시행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힘

9 영국

가.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의 전환

[조세동향 16-01호]

- 영국은 2015년 11월 발표한 재정지출분석보고서의 후속조치로, HMRC의 세무행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함⁴⁶⁾
 - 세정당국은 디지털 방식을 통해 납세협력의 부담을 줄이고, 세무행정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함
 -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세무행정 중 하나로 ‘디지털방식의 전환’을 위해 130억 파운드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 세정당국은 납세자의 근로정보, 금융정보, 기타 적절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세무행정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음
- 세정당국이 전환하고자 하는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4가지 기본방향을 담고 있음⁴⁷⁾
 -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납세행정을 단순화함
 - 세정당국이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납세자의 디지털 계정을 통해

45) Tax notes international, p.444, 2016.03.07.

46) HMRC,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2015. 11, p. 35

47) HMRC, "Making tax digital," 2015. 12, p. 5

자료를 수취하게 되고, 납세자는 고용주, 은행 혹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취하여 세정당국에 제공할 필요가 없음

-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한곳에서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까지 납세자는 디지털 계정을 통해 납부세액, 재정지원혜택과 같은 재정상황을 은행의 온라인 계정처럼 한곳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기업을 위해 구축됨
 - 실시간으로 세정당국은 기업의 세무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 확정을 위해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
-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개인납세자를 위해 구축됨
 - 개인납세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됨
- 2016년까지 모든 개인납세자와 소기업은 온라인 은행계좌처럼 보안 디지털 세무계정을 통해 세정당국의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음
 - 이미 200만개 이상의 소기업은 HMRC 디지털 계정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 납세자에 대한 디지털 계정은 2015년에 도입되었음
 - 개인들은 2017년부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하나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납부의무가 있는 다양한 세금과 제출의무가 있는 서식이 통합되어 행정절차가 간단해질 것임
- 2020년까지 기업과 개인납세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등록, 신고, 납부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되므로 확정을 위한 별도의 연간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임
 - 세무행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세정당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세무관련 자료를 수취하게 되어 납세자들은 세액 확정을 위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임
 - 2018년 4월부터 자영업자, 임대사업자를 포함하여 기업은 주요 원천소득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갱신하여야 함

〈표 11-2〉

영국의 디지털 세무행정시스템에 대한 로드맵

구분	진행과업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공 범위와 작업, 단순한 세무행정, 제3자 정보와 관련한 공개회의 • 납세자는 디지털계정을 통해 국민보험기여금이 주 연금(State Pension)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영국의 모든 500만 소기업과 모든 개인납세자는 디지털 계정을 통해 HMRC가 보유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납세자와 HMRC 간의 통신 보안에 대한 테스트 시작 • 납세자의 디지털 계정에 PAYE(원천징수)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webchat)를 도입함 • 소기업의 전자 세무신고를 위한 테스트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저축공제를 초과하는 금융기관과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의 이자를 근로자와 연금수급자의 세무 코드에 포함함 • 근로와 연금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액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용에 대한 테스트 시작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소득에 대한 전자신고의 테스트 시작 • 새로운 온라인 빌링 시스템 시작 • 디지털 계정을 통해 납세자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득원천을 신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계정으로 납세자는 한곳에서 전반적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음 • 납세자의 자동 세무코드 조정은 초과 혹은 미달 PAYE(원천징수)을 방지함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의 디지털 계정에 금융기관과 주택금융조합에서 수령한 이자를 확인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기업, 자영업자와 임대업자는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을 위해 분기별로 납세자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정보의 갱신을 시작함 • HMRC에 자녀수당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더 이상 신고할 필요 없음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기업, 자영업자와 임대업자는 VAT를 위해 분기별로 납세자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정보의 갱신을 시작함 • 주거용 자산의 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기업, 자영업자와 임대업자는 법인세를 위해 분기별로 납세자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정보의 갱신을 시작함 • HMRC의 모든 서비스는 디지털 계정을 통해 이루어짐

나. 2016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6-03회]

- 2016년 예산안의 세법개정 사항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건강증진을 위해 청량음료산업에 부담금 도입,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ISA제도의 도입 등을 다루고 있음
 - 세계경제의 침체로 경기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G7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생산성 증가율(productivity growth)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⁴⁸⁾
 - 이를 극복하고자 저축과 근로를 장려하고 기업투자를 강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함⁴⁹⁾
 -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지출과 복지 등을 축소함⁵⁰⁾
 - 2015년 예산에서 밝혔던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의 정책방향과 같이 부처별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공지출을 감축하고 공공연금의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발표함

1) 소득세

-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2018 과세기간 동안 고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구간 금액을 45,000파운드로 인상하고, 인적공제액은 11,500파운드로 인상함
 - 이는 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하던 것에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짐
 - 이전 2015년 3월에 발표한 예산안에서는 2017/2018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고세율의 소득 구간은 43,300파운드, 인적공제액은 11,000파운드였음

48) HMRC, "Budget 2016," p. 1

49) HMRC, "Budget 2016," p. 1

50) HMRC, "Budget 2016,"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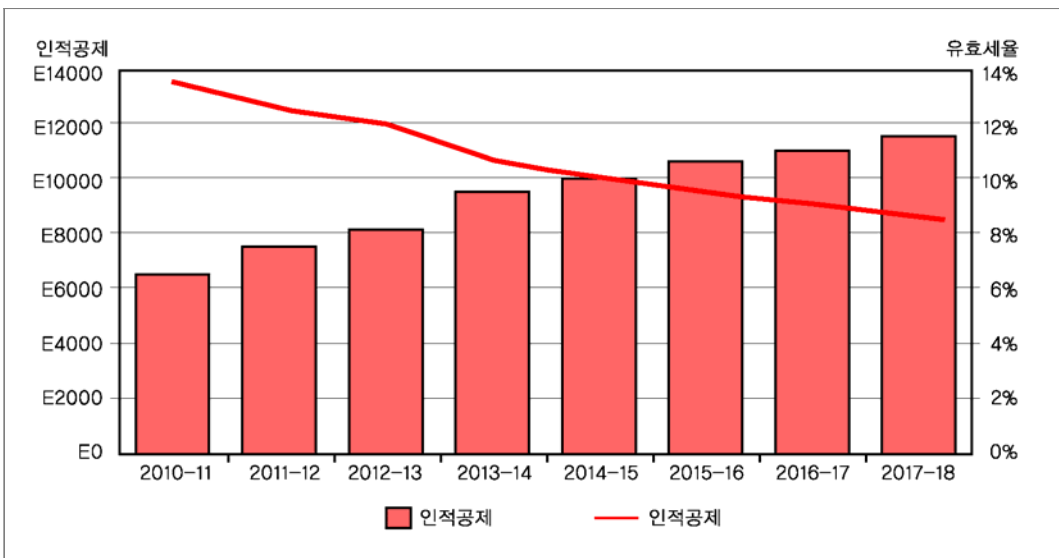
〈표 II-3〉 2016 예산안에 따른 영국의 소득구간

(단위: 파운드)

구분	2015/2016	2016/2017	2017/2018
고세율의 소득구간	42,385~150,000	43,000~150,000	45,000~150,000

- 이번 개정으로 유효세율은 더 낮아지게 되었으며, 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납세자 수는 기존에 비해 585,000명 낮아질 것임
 - 2012년 영국의 소득세 통계를 살펴보면, 총신고대상 인원은 30,547천명으로 이중 총소득이 30,000파운드 이상으로 집계되는 인원은 2,967천명⁵¹⁾인 점을 참고할 수 있음

[그림 II-1] 영국의 인적공제와 유효세율



자료: HMRC, "Budget 2016," p. 30

- 영국은 주택마련과 은퇴 대비를 위한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불입액의 25%를 보너스로 제공하는 평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Lifetime ISA, 평생 ISA)를 2017년 4월 6일부터 도입함⁵²⁾

51) 영국 국세청, Personal Incomes Statistics 2012~2013

52) HMRC, "Budget 2016," p. 47

- 평생 ISA는 18세부터 40세 이하의 성인이 개설할 수 있으며 50세까지 계속하여 불입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불입할 수 있음
- 연간 최대 4천파운드를 적립할 수 있으나 매달 적립하는 금액의 제한은 없음⁵³⁾
- 기존 ISA를 평생 ISA로 전환할 수 있고 2017년 4월 5일 이전에 개설된 기존 ISA에 4천 파운드를 이미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평생 ISA의 연간 적립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4천파운드를 추가 불입할 수 있음⁵⁴⁾
- 평생 ISA는 인출이 자유로운 기존 ISA와 달리 가입자의 첫 주택마련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의 연령 60세 이전의 중도 인출에 제약이 있음
- 첫 주택마련 이외의 중도 인출하게 되는 경우 정부 보너스와 5% 기간이익을 함께 반환하여야 함
- 450,000파운드 이하의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평생 ISA를 인출할 수 있으며 개설 이후 12개월부터 언제든지 정부 보너스와 함께 인출이 가능함

2) 법인세

-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까지 현행 법인세율을 20%에서 17%로 인하할 예정임⁵⁵⁾
- 당초 2015년 예산안의 법인세율 인하계획보다 더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백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지난 예산안에서 수익규모가 적은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과 그 외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20%로 통합하고 2017년에 19%, 2020년에는 18%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영국은 G20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가 될 것임
- 법인세율의 완화로 인해 60만개의 소기업들은 세부담이 없을 것이며, 이후 5년간 67억 파운드까지 법인세 부담이 절감될 것임

53) The new lifetime ISA(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08176/Lifetime_ISA_final.pdf), p.2

54) The new lifetime ISA(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08176/Lifetime_ISA_final.pdf), p.4

55) HMRC, "Budget 2016," p. 45

- 정부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자본이득세율을 8%p 인하함⁵⁶⁾
 - 자본이득세율은 현행 고세율(higher rate)을 28%에서 20%로 낮추고, 기본세율(basic rate)은 18%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함
 - 이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와 주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 주택에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개인의 주된 거주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비과세규정(Private Residence Relief)은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개인주택 비과세규정은 개인의 주된 거주주택 중 보유기간, 규모 등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자본이득의 전체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임

-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기업가 감면(Entrepreneurs' Relief)을 비상장기업의 주식에도 적용하여 장기투자에 따른 혜택을 확대할 방침임⁵⁷⁾
 - 기업가 감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18%의 자본이득세율 대신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임
 - 현행의 적용요건은 최소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 특정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⁸⁾
 - 대상자는 회사의 임원(office holder)이거나 직원(an employee)이며, 회사는 투자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회사에 해당되어야만 적용 가능함
 - 특정 주식은 회사의 최소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식이거나, 중소기업의 경영진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업경영인센티브(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에 따른 주식에 대하여 적용됨
 - 이번 개정은 2016년 3월 17일 이후에 매입한 비상장기업의 신주에 대해 2016년 4월 6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보유한 경우 적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기업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한도(lifetime limit) 1천파운드의 대상이 됨

56) HMRC, "Budget 2016," p. 48

57) HMRC "Budget 2016," p. 48

58)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entrepreneurs-relief/how-to-claim>, 2016.03.30. 검색

- 소상공인(micro-entrepreneurs)의 세무처리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투자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해 1,000파운드의 일괄공제를 적용함⁵⁹⁾
 - 디지털경제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빠른 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수가 증가하고 경제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소상공인의 투자소득과 자산소득이 1,000파운드 이하일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출내역의 산정이 필요 없이 일괄공제를 통해 간단히 세무처리할 수 있음

- 아동 비만이 국가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비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설탕 섭취를 낮추기 위해 청량음료산업에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함⁶⁰⁾
 - 영국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평균 비만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만은 사회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비만과 관련된 질병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소요됨
 - 초등학교에 입학 시 10%의 아동이 비만에 해당되며 졸업 시에는 20%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가 비만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50억파운드로 이를 포함하여 국가경제에 미치는 비용은 270억파운드로 추산됨
 - 청량음료 100ml당 5g의 설탕이 함유된 경우에 기본 부담금이 적용되며, 100ml당 8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등하여 높은 부담금이 징수됨
 - 청량음료산업에 대한 부담금규정은 2017년 재정법에서 입법될 예정이며 2018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재무장관은 부담금규정의 도입으로 청량음료 제조과정에서 설탕 첨가가 줄어들 것으로 보며 징수된 부담금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동의 체육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추가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체육교육에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가 높은 아침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밝힘

59) HMRC, "Budget 2016," p. 48

60) HMRC, "Budget 2016," p. 32

3) 국제조세

- 정부는 2015년 재정법에서 규정한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를 일부 수정하여 최종 국가별보고서를 2016년 2월 26일 발표함
 - 2015년 재정법(Finance Act 2015)에서 국가별보고서를 도입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보고서를 요청함
 - 영국은 국가별보고서 도입을 위해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템플릿에 따라 실행할 것이라고 2014년 9월 20일에 발표한 바 있음
 - 최종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기존 2015년 재정법에서 규정한 초안에 따르되 일부 내용을 수정함

- 기존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일반적으로 제출 대상요건과 제출될 자료에 대해서는 OECD Action 13 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
 -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자회사(sub groups)가 영국에 있는 경우로 연간 매출액이 5.86억파운드 이상인 기업에 한정함
 -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각 과세관할권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연간 국가별보고서를 과세당국(HMRC)에 제출하여야 함
 -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거나 납부한 세금, 세전 순이익과 매출액을 신고함
 - 전체 고용자 수, 자본, 이익잉여금, 무형자산에 대하여 신고함

- 최종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적용대상 매출액의 통화기준과 신고대상을 수정하고 과태료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⁶¹⁾
 - Action 13 보고서에서 권고한 적용대상이 되는 매출액을 파운드로 환산한 5.86억파운드 대신 동일한 통화기준에 따라 7.5억유로로 수정함
 - 이러한 수정은 OECD 보고서에서 사용한 통화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가간 상이한 통화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무부의 국제조세 책임자가 설명함⁶²⁾

61)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untry-by-country-reporting-updated/country-by-country-reporting-updated>, 2016.03.30. 검색)

62) tax notes international, p. 840, 2016.03.07.

- 다국적기업의 모기업 과세관할권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자간 과세당국협약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다국적기업의 영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이 국가별보고서를 과세당국(HMRC)에 제출함
 - 즉, 다국적기업의 영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하위그룹의 모든 실체를 포괄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함을 의미함
-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과 같이 국가별보고서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고의에 의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 법인의 이자공제 제한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조세동향 16-05호]

- 영국은 BEPS Action 4에서 권고하는 이자공제 제한규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1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초안을 2016년 5월에 발표⁶³⁾함
- 영국은 2016년 예산안에서 BEPS Action 4에서 권고하는 이자공제 제한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⁶⁴⁾하였으며, 이에 대한 1차 의견수렴을 2016년 1월 14일까지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음
 - 영국 정부는 BEPS Action 4의 이자공제 제한에 대한 권고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2015년 10월 22일에 논의를 시작하였음
 - 1차 의견수렴에서는 이자공제의 제한을 위한 영국내 이자, 감가상각을 공제하기 이전의 과세소득(EBITDA)의 10~30% 비율 설정에 대한 의견과 그룹비율규정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하여 총 18건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정부는 1차 의견수렴을 통해 고정비율규정은 EBITDA의 30%를 순이자의 공제한도로 하고, 그룹비율규정을 발표함
 - 규정은 기업별 적용이 아닌 그룹별 적용으로 이루어질 것임
- 또한, 정부는 세원잠식의 위험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납세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자공제 제한규정의 최소 금액기준을 1년에 1백만파운드에서 2백만파운드로 상향 조정함

63) HMRC 「Tax deductibility of corporate interest expense」, 2016.05

64) HMRC(<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consultation#introduction>), 2016.05.26접속

- 상향 조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은 90%에서 95%로 확대됨

- 정부는 5월 발표한 초안과 관련하여 2차 의견수렴을 8월까지 진행하고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
 -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이후 규정이 확정되면 2017 재정법을 통해 입법될 예정임
 - 2차 의견수렴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그 외 회계기준(UK GAAP, US GAAP)을 사용하는 그룹에 실제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자 한도 계산을 위한 기간산정에 제안된 방법은 적절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총 46건의 의견을 요청함

라. 이전가격에 대한 2차 조정규정(Secondary Adjustment Rule)도입을 검토

[조세동향 16-06호]

- 영국은 이전가격세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2차 조정규정의 도입을 고려중임⁶⁵⁾
 - OECD의 이전가격가이드라인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2차거래로 보아 배당과 출자로 간주하는 두 가지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영국의 조세체계에서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함
 - 배당으로 간주하는 방법은 해외기업에서 발생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간주 배당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며, 영국기업이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 이행을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 지분출자로 간주하는 방법은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2차 조정규정은 OECD의 권고와는 달리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출로 2차 거래를 간주하여 처리하는 규정임
 - 영국은 2차 조정규정 도입을 논의하기 이전에는 이전가격세제에서 1차 조정만을 적용하였음⁶⁶⁾

65) HMRC(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4598/Introduction_secondary_adjustments_into_UKs_domestic_transfer_pricing_legislation.pdf), 2016.06.30. 최종접속

- 이에 따라 2차 조정규정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은 5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하여 입법에 반영할 예정임
- 2차 조정규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은 16가지로, 대출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의 장·단점이나, 규정의 적절한 적용기준의 수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10 이탈리아

가. 2016년 개정세법 발표⁶⁷⁾

[조세동향 16-01호]

- 이탈리아 국회는 2015년 12월 28일 2016년 개정세법안(Stability Law for 2016)을 채택하고 정부는 이를 2015년 12월 30일 발표함

1) 법인세

-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금융기관의 이자비용공제 확대,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인하, CFC제도 적용면제 조항 도입, 국가별보고서 의무화,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특례 개정 등을 포함함
- 단일 법인세율을 기존 27.5%에서 24%로 3.5%p 인하함
 - 단, 은행 등 금융업 영위 법인들은 3.5%의 추가소득세(surtax)를 과세함으로써 금융업 법인들에게는 실제적인 법인세 인하효과가 없음
- 금융기관의 이자비용 공제금액을 확대함

66) OECD의 이전가격가이드라인(문단 4.70)에 따르면, 배당이나 출자로 간주하는 2차 조정을 인해 수많은 거래와 간주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1차 조정이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관할권의 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대출거래로 규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간주 이자의 문제로 복잡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함.

67) Italy - Stability Law for 2016 - summary(13 Jan. 2016), News IBFD.

- 은행 등 적격 금융기관의 이자비용을 전액 공제 허용함
 - 단, 보험회사의 경우 총이자비용의 최대 96%까지 공제 가능함
- EU 또는 EAA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대하여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들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함
 -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EU 또는 EEA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EU 또는 EEA 국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375%에서 1.2%로 인하함
- 대체세(substitute tax) 납부를 통한 특정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증액 인정,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특례 및 각종 세액공제 도입 등 다양한 특례제도를 신설함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납세자는 본인 소유의 비상장주식 또는 적격 토지에 대하여 시가와 장부가액에 대해 8%의 대체세를 납부하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증액할 수 있음
 - 2016년 9월 30일 이전까지 법인과 파트너십 등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판매하는 유·무형 자산의 양도소득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대신 대체세(장부가액과 시가 차이의 8%)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음
 -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말까지 취득하는 적격 생산기계 및 시설장비 중 연상각률이 6.5% 이하인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140%까지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상각할 수 있음
 - 법인 구조변경(reorganization) 등으로 증액된 상표권과 영업권에 대해서는 상각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가속상각할 수 있도록 함
 - Abruzzo, Basilicata, Calabria 등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소재한 법인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소기업의 경우 20%, 중기업 15%, 대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공유산의 유지, 보호, 재건 또는 공공장소와 문화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목적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5%로 조정함
- 직전연도 그룹 매출 총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이탈리아 본사는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1만~5만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됨

-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음
 - 법인명과 주된 사업활동
 - 매출액 및 근로자 수
 - 세전 이익/손실과 법인세납부액
 - 국가 보조금 수령액 등

2) 소득세

-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금소득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일부 특별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연장, 신혼부부 주거비용 관련 세액공제 신설 등이 있음
- 과세소득이 7,750유로 이하인 납세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을 1,783유로로 인상하는 등 소득구간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
 - 소득구간 7,750유로에서 15,000유로까지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1,255 + (528 \times (15,000 - \text{과세소득}) \div 7,250)$
 - 소득구간 15,000유로에서 55,000유로까지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1,255 + ((55,000 - \text{과세소득}) \div 40,000)$
- 2015년 말로 폐지될 예정이던 부동산의 에너지효율 증대와 리노베이션 및 리노베이션 관련 가구 매입 등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말로 연장함
 -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비용의 65%
 - 부동산의 리노베이션과 리노베이션 관련 가구 취득 비용의 50%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6년에 발생하는 가구 취득 비용의 50%(한도 16,000유로)를 세액공제함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공공위생용역과 적격 전자출판물 공급에 적용하는 새로운 경감세율 도입 등이 있음

- 2016년 예정되었던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2017년으로 유예함
 - 경감세율: 현행 10%에서 2017년부터 13%로 인상
 - 표준세율: 현행 22%에서 2017년 24%, 2018년에는 25%로 인상
-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공공위생용역에 적용하는 최대경감세율 5%를 신설함
-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또는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등으로 등록되는 적격 전자출판물 공급에 대해서는 새로운 4%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4) 기타 세목

- 기타 세목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농업용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신규 채용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 면제, 농업용 토지에 대한 등록세 인상 등이 있음
 - 농업용 토지와 산간지역에 대한 지방 부동산세를 면제하고, 면제 대상 납세자의 범위를 농업사업자로 확대함
 - 2016년에 채용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40%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연간 3,250유로를 한도로 최대 2년간 면제함
 - 농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등록세가 12%에서 15%로 인상됨

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대상 재화 확대⁶⁸⁾

[조세동향 16-05호]

- 이탈리아는 2016년 5월 2일부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게임기,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거래에 포함함
 - 이는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지침(Council Directive 2013/43/EU⁶⁹⁾)에 따른 것으로, 동지침은 조세탈루 위험이 높은 상품군에 대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이 한시적으로 대리

68)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pdf/2016/05/tnf-italy-may2-2016.pdf>

6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201:0004:0006:en:PDF>

납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핸드폰 부품과 핸드폰 악세서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핸드폰은 기존 규정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함
 - 핸드폰 부품과 핸드폰 악세서리(충전기, 이어폰 등)는 핸드폰과 함께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됨
- 한편, 채석장과 광산에서 직접 공급하는 골재(aggregate)와 슈퍼마켓, 할인상점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EU의 부가가치세지침은 이들 항목에 대해 대리납부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함

11 터키 -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안 발표

[조세동향 16-02호]

- 터키 정부는 1월 14일에 적격회사에 대한 기준 완화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발표함⁷⁰⁾
 - 이번 방안으로 전체 경제에서 연구·개발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1%에서 3%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투자, 성과, 인력의 기술과 고용수준, 기술기업(technology companies)의 수를 높이고, 산학협력,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의 통합 등을 목적으로 함
 - 이번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임
- 연구·개발활동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법인의 요건 중 최소 고용 직원의 수를 낮추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상한액을 인상함
 - 현행 적격법인의 최소 고용 직원 수는 30명인데 이를 15명으로 기준을 완화할 방침임
 - 적격법인에 대한 지원상한액은 10만리라에서 50만리라로 인상함

70) IBFD(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01-18_tr_1.html)

- 2년간 연구·개발센터의 기초과학에서 학사학위를 보유한 직원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
 - 지원하는 직원 임금은 최소 임금과 동일한 총액을 지원할 것임
 - 기술개발센터에 디자인 활동도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될 것임
- 연구·개발, 디자인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상품의 수입관세 면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아님⁷¹⁾

12 폴란드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 시행 예정

[조세동향 16-06호]

- 폴란드는 2016년 6월 14일에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도입을 발표하였고,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폴란드의 GAAR은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폴란드 세법에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짐
- 이번에 도입되는 일반적 조세회피규정은 실질적인 행위 없이 형식만을 갖추어 10만즈워티 이상의 조세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함⁷²⁾
 - 조세혜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상황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행위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조세회피를 의도한 행위로 일반적 조세회피규정이 적용됨
 - 정당하지 않은 사업의 분할
 - 경영이나 경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중개실체가 개입하는 경우
 - 거래 이전의 상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
 - 거래과정에서 합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제적 혹은 경영상 위험이 조세혜택 이외에 거래에서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등

71) Tax analysis(2016.02.08.), p. 492

72) EY(<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Polands-President-signs-GAAR-provisions>, 2016.06.30. 최종접속)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서 조세혜택은 납세의무가 연기되거나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 혹은 세무상 결손을 과대계상한 경우 등에 해당함
- 조세회피행위로 간주된 거래에 대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타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조세회피행위로 간주된 거래에 조세회피를 상쇄하는 다른 세법규정이 적용된다면,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권한은 재무부에만 부여됨
-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의견을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에 조세회피에 해당되지 않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는 조세회피를 의도하는 거래로 가정될 수 있음

13 프랑스 - 2015년 개정세법에 대한 수정법안 발표⁷³⁾

[조세동향 16-01호]

- 프랑스 국회는 2015년 12월 17일 2015년 개정세법 수정안(Amending Finance Bill for 2015,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5)을 채택하고 정부가 2015년 12월 30일 발표함

1) 법인세

-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영참가소득면제와 배당지급 원천징수 면제 규정 개정, 이전가격세제 관련 국가별보고서 의무제출 규정 도입 등이 있음
-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소재하는 모회사가 결손상태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모회사에 프랑스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은 30%의 프랑스 원천징수세가 면제됨
- 기존 세법에서는 EU에 소재하는 법인이 프랑스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모 법인이 프랑스 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2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 한해 프랑스 원천

73) France; French Guiana; Guadeloupe; Martinique; Reunion - Amending Finance Law 2015 - adopted(22 Dec, 2015), News IBFD.

징수세가 면제되었음

- 기존 세법은 프랑스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프랑스 모법인과 EU 또는 EEA 소재 모법인에 대한 과세 차별을 발생시켜 EU법상 설립의 자유 (freedom of establishment) 원칙에 위배되어 개정됨
 - 결혼상태의 프랑스 모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결혼과 상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결혼상태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EU 또는 EEA 법인은 결혼금 공제 사용의 제한으로 수입배당금 공제가 불가함

- 경영참가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규정과 관련하여 배당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및 세이프하버조항(safe harbor rule) 등이 도입됨
 - 기존에는 EU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에 한해 적용되었으나 적용 대상을 EEA 지역 소재 법인으로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면제규정 적용요건을 완화함
 - 영리법인의 경우 경영참가소득면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의 5% 이상을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2.5%로 완화하는 대신 소유기간을 5년으로 함
 - 특정 거래나 투자구조 형태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 또는 EU 모회사법(EU parent-subsidiary directive)에 따른 배당소득면제규정 남용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프랑스 원천징수면제 적용을 배제함
 - 프랑스 세법상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는 경영참가소득면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의 사업정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소득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세이프하버규정 도입

- 직전연도 그룹 매출 총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프랑스 본사는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는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음
 - 법인명과 주된 사업활동
 - 매출액 및 근로자 수
 - 세전 이익/손실과 법인세납부액
 - 국가 보조금 수령액 등

2) 소득세

-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EU 또는 EEA 거주자인 이사의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제도 도입, 비거주자에 대한 최저한세 폐지 등이 있음
 - EU법에 따라 EU 또는 EEA 거주자인 이사가 비거주국에서 획득한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동 보수에 대하여 이사의 거주지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함
 - 프랑스 내에 거소를 소유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함
 - 기존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프랑스 소재 부동산 임대가치의 3배를 명목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음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일부 농산품에 대한 경감세율 배제, 조세탈루범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이 있음
 - 식품 또는 농산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농산 원재료를 10%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20%의 일반세율을 적용함
 - 재화거래에서 공급자가 조세를 탈루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세탈루범과의 거래에 대한 매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적용을 용역거래에도 확대하여 적용함

14 EU

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조세회피방지 패키지 발표⁷⁴⁾

[조세동향 16-02호]

74)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company_tax/anti_tax_avoidance/index_en.htm), EY(<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Europe-Commission-releases-anti-tax-avoidance-package-designed-to-provide-uniform-implementation-of-BEPS-measures-and-minimum-standards-across-Member-States>)

- 2016년 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EU 내에서의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 조세투명성 제고, 기업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조세회피방지 패키지(Anti Tax Avoidance Package)를 발표함
- EC의 조세회피방지 패키지는 크게 (i)조세회피방지 법안, (ii)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실행 법안, (iii)효과적 과세를 위한 대외전략 커뮤니케이션, (iv)조약남용방지 실행을 위한 권고사항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1) 조세회피방지 법안

- 조세회피방지 법안(proposed Anti Tax Avoidance Directive)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공격적 조세회피전략(aggressive tax planning) 대응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여섯 가지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 조세회피방지 법안에 포함된 여섯 가지의 대응방안에는 (i)이자비용공제 제한, (ii)기업들에 대한 출국세, (iii)스위치오버(Switch-over)제도, (iv)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v)CFC제도, (vi)혼성불일치 과세제도 등이 있음
 - 여섯 가지 대응조치 중 이자비용공제(Action 4), CFC제도(Action 3), 혼성불일치(Action 2)는 OECD/G20 BEPS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사안임
 - 반면 기업 출국세, 스위치오버제도,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은 BEPS프로젝트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임
- 이자비용공제 제한: 이자비용은 아래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30%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안함
 - 이자비용이 100만유로 이하인 경우
 - 납세 기업의 총자산 대비 자본비율이 동 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비율보다 2%p 이하로 낮은 경우
 - 은행, 보험업 등 금융기관
- 출국세(Exit taxation): 기업의 거주지 이전(residence migration),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과 본사 사이의 자산이전 시 납세자의 원거주지국 또는 자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출국세의 과세대상 금액은 자산의 시가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스위치오버(Switch-over)제도: 기존에는 적격주주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과 자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과세면제되었으나, 해당 자회사가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경우 동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안함
- 저세율국은 해당 EU국가 법인세율의 40%에 미달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 함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정된 인위적 거래에 대한 조세특례를 부인하는 규정으로 EU의 모회사-자회사법(Parent- subsidiary Directive)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제도: EU지역 외의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비상장 회사의 주된 소득이 이자, 사용료, 배당금, 임대 또는 부동산 소득 등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인 경우 그러한 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 모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제안함
- 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유효세율의 40%에 미달하는 유효세율을 적용받는 자회사를 그 대상으로 함
- 혼성 불일치(Hybrid mismatch) 과세제도: 혼성체(hybrid entity)와 혼성상품(hybrid instrument)에 대한 국가간 다른 세무상 취급으로 발생하는 이중비과세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지급금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취급 기준에 따라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 동일하게 과세 처리하도록 제안함
- 원천지국 불공제, 거주지국 비과세를 우선기준(primary rule)으로 하는 OECD/G20 BEPS프로젝트 Action 2와 차이를 보임

2)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실행 법안

- EU는 기존의 행정협력법(Administrative Cooperation Directive)을 개정하여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를 자동교환 대상 정보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함

- 동 법안은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서 제시한 국가별보고서의 신고대상자, 시행 시기, 신고내용 등의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총매출이 7.5억유로 이상인 그룹의 최종모법인이 거주지국의 과세관청에 신고함
-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보고서 신고대상이 되며 신고의무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각국의 과세당국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여야 함
- 국가별보고서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조세관할지역별 매출액, 세전이익/손실, 법인세 납부액, 법인세비용, 종업원 수, 자본금, 누적이익잉여금, 유형자산 등의 재무정보와 각 지역별 현지거주법인의 주된 사업활동 등의 정보를 포함함

3) 효과적 과세를 위한 대외전략 커뮤니케이션

- 효과적 과세를 위한 대외전략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on an External Strategy for Effective Taxation)은 EU가 단일시장으로서 ‘바람직한 조세 거버넌스(tax good governance)’를 위해 제3국과 협력할 때보다 일관된 대외전략을 갖추도록 권고함
-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EU회원국은 ‘바람직한 조세 거버넌스’에 반하는 비EU국가의 리스트를 EU 차원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함
- EU 리스트에 오른 국가에 대한 통일된 대응방안은 2016년 말까지 수립될 계획임

4) 조약남용방지 실행을 위한 권고사항

- EC는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6(조약남용)과 Action 7(고정사업장)의 결론을 고려하여 EU회원국들에게 조약남용방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동 권고사항은 EU회원국들이 조세조약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i)주된 목적 테스트 규정(principal purpose test: PPT규정) 도입과 (ii)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 및 배제요건 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PPT규정: 특정 국제거래의 형태나 방식의 주된 목적이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약혜택을 부인하는 PPT규정을 조세조약에

도입할 것을 권고함

- 고정사업장 정의 및 배제요건: 현행 OECD모델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배제규정이 조세회피에 남용되는바, 추후 개정될 OECD모델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 조항을 반영하여 조약을 개정하도록 권고함

나. EU의 부가세 단일시장 확립을 위한 부가세 실행계획을 발표⁷⁵⁾

[조세동향 16-04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16년 4월 7일 EU 차원의 부가세 단일시장 확립을 위한 부가세 실행계획(VAT Action Plan)⁷⁶⁾을 발표함
 - 부가세 단일시장은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과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장치로 EU의 고용, 성장, 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임
 - 현재 EU의 부가세체계는 글로벌 디지털경제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납세협력 부담을 지우거나 부가세 탈세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 EC가 발표한 부가세 실행계획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제시됨
 - 최근 현안에 대한 정책계획
 - 부가세 조세격차(VAT gap) 해소를 위한 긴급 조치
 - 부가세 조세격차 해소를 위한 중기 계획
 - 부가세 세율 정책의 현대화
- 최근 현안에 대한 정책계획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위한 부가세 장벽 제거와 중소기업을 위한 부가세 패키지를 주된 내용으로 함
 -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세 납세협력 편의를 위한 간소화제도 도입, 단일 부가세 세무조사, 비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한 소량 재화에 대한 면세 철폐 등이 제시됨

75)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vat/action_plan/index_en.htm

76)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action_plan/com_2016_148_en.pdf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세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함
- 부가세 조세격차 해소를 위한 긴급 조치로는 EU 회원국 및 비EU 회원국 간의 조세협력 강화와 조세행정 효율화, 조세징수 효과성 제고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 부가세 조세격차 해소를 위한 중기 계획으로는 EU 지역 내의 국제거래와 EU 회원국 내의 내수거래에 대한 무차별화를 통한 단일시장 확립 계획이 제시됨
- 부가세 세율의 현대화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EU 부가세 지침(VAT Directive)⁷⁷⁾에 대한 변경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함
 - 현행 최소 일반세율인 15%와 경감세율 대상 목록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경감세율 대상 목록을 검토 및 수정
 - 유해조세경쟁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각 EU 회원국의 부가세 세율 결정권한을 강화함
- 상기의 부가세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각 항목별로 제시될 계획임

다. 현행 부가세 최저기준세율 유지 결정⁷⁸⁾

[조세동향 16-06호]

- 유럽연합(EU)의회는 2016년 5월 25일 현행 부가세 최저기준세율 15%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
 - EU의 기존 부가세 최저기준세율 15%는 2015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향후 2년간 최저세율을 유지하게 됨
- 부가세 최저기준세율 유지 결정은 EU의 부가세 단일시장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EU의 부가세 관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77) 현행 EU 부가세 지침은 표준 부가세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재화와 용역을 나열하고 있음

78)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5/25-minimum-vat-rate-extended/>

- EU는 부가세 단일시장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EU 단일시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EU회원국 간 과도한 부가세율의 차이로 인한 경쟁의 왜곡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15 OECD

가.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과세당국 간 협정 체결⁷⁹⁾

[조세동향 16-02호]

- 2016년 1월 16일 OECD/G20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자동교환을 위한 장치인 다자과세당국간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체결식에서 31개국이 협정에 서명함
- 2016년 2월 4일 세네갈이 동 협정에 추가 서명함으로써 총 32개국이 MCAA를 통한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OECD국가로는 한국과 미국 등 8개국을 제외한 26개국이 서명함
 - OECD국가 중 미체결 8개국: 캐나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뉴질랜드, 터키, 미국
 - 비OECD국가 중 체결 6개국: 코스타리카,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 각 과세당국은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소득과 조세의 분배, 경제활동의 소재지 등 보다 총체적인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여 이전가격을 통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별보고서의 첫 자동교환은 2017-2018년 사이에 2016사업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임

79) OECD.

(<http://www.oecd.org/tax/a-boost-to-transparency-in-international-tax-matters-31-countries-sign-tax-co-operation-agreement.htm#note>)

나. BEPS프로젝트의 확대 참여를 위한 포용체계 발표⁸⁰⁾

[조세동향 16-03회]

- 2016년 2월 23일 OECD는 BEPS 이행을 위한 포용체계(inclusive framework)에 동의함으로써 BEPS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국가를 BEPS 준회원국(associates) 자격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BEPS 이행을 위한 포용체계는 2016년 2월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됨⁸¹⁾

- BEPS프로젝트의 포용체계는 BEPS 준회원국의 지위, 우선순위 설정, 거버넌스,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함⁸²⁾
 - BEPS프로젝트의 모든 참여 희망국들에게 준회원국의 지위를 부여하여 BEPS 기준 설정(standard setting)과 BEPS 이행 모니터링에 G20 및 OECD국가들과 동등한 지위로 참여시킴
 - 준회원국 허입 및 자격부여에 대한 절차는 향후 보고될 예정임
 - 포용적 체계는 유해조세환경(액션5), 조약남용방지(액션6), 국가별보고서(액션13), 분쟁해결장치 제고(액션14) 등 BEPS프로젝트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이행 검토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춤
 - 포용적 체계의 거버넌스(governance)는 관련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 및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대표성을 가진 국가를 대표그룹으로 하여 이끌어가도록 함
 - 여타 국제기구 및 지역별 조세기구(regional tax organizations)를 참관기구(observer)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개발도상국들의 필요에 대응하게 함

80) OECD

([http://www.oecd.org/tax/all-interested-countries-and-jurisdictions-to-be-invited-to-join-global-efforts-led-by-the-oecd-and-g20-to-close-international-tax-loopholes, htm](http://www.oecd.org/tax/all-interested-countries-and-jurisdictions-to-be-invited-to-join-global-efforts-led-by-the-oecd-and-g20-to-close-international-tax-loopholes.htm))

81) G20([http://www.g20.org/English/image/201603/t20160301_2173, html](http://www.g20.org/English/image/201603/t20160301_2173.html))

82) OECD Secretary-General Report to G20 Finance Ministers, February 2016, p.9.

(<https://www.oecd.org/tax/oecd-secretary-general-tax-report-g20-finance-ministers-february-2016.PDF>)

다. 국민연금기금을 조세조약상 설립국의 거주자로 취급하는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안 발표⁸³⁾

[조세동향 16-03호]

- OECD는 2016년 2월 29일 BEPS프로젝트 액션⁸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설립지국에서 과세면제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취급하도록 하는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안을 발표함
 -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은 2016년 4월 1일까지로 함
-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안에 따라 조세조약상 설립지국의 거주자로 취급받는 ‘적격 연금기금(recognised pension fund)’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조세조약의 일방체약국에 설립된 단체 또는 계약(arrangement)으로 개인들의 퇴직금이나 그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또는 거의 유일한 목적으로 위해 운영되어야 함
 - 해당 단체 또는 계약은 설립지국의 세법에 따라 독립적인 ‘인(person)’으로 취급되어야 함
 - 해당 단체 또는 계약은 설립지국의 정부로부터 연금기금으로 규제되어야 함
 - ‘적격 연금기금’에 대한 투자를 유일한 또는 거의 유일한 목적으로 단체 또는 계약도 ‘적격 연금기금’으로 봄

라. BEPS프로젝트 Action 6의 비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약혜택 부여 관련 협의문서 발표⁸⁵⁾

[조세동향 16-04호]

- OECD는 2016년 3월 24일 BEPS프로젝트 Action⁸⁶⁾의 후속 절차 중 하나인 비집합투자기구(non-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에 대한 조약혜택 부여와 관련하여 협의문서(consultation document)⁸⁷⁾를 발표함

83) OECD(<http://www.oecd.org/tax/discussion-draft-treaty-residence-pension-funds.htm>)

84) BEPS프로젝트 액션6 최종보고서 문단 12-13 참조.

85) <http://www.oecd.org/tax/treaties/beps-consultation-treaty-entitlement-non-civ-funds.htm>

86) OECD BEPS프로젝트 액션6 최종보고서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 2015년 10월 발표된 Action6 최종보고서에서는 비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약혜택 부여와 관련된 논의를 2016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함
- 본 협의문서는 비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약혜택 부여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 “LOB”)규정 적용 문제
 - 주목적시험(principal purpose test, “PPT”)규정 적용 문제
 - 도관 방지(anti-conduit rules)규정 적용 문제
 - 특별 과세체계(special tax regime) 문제
 - 기타 건의사항
- LOB규정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을 제시함
 - 비집합투자기구가 조약혜택 부여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설립지국에서의 규제 요건과 분산소유(widely-held)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 비집합투자기구를 투명체(transparent entity)로 보아 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조약혜택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
 - 비집합투자기구의 동등수혜자(equivalent beneficiaries) 비중이 일정 수준(예: 80%) 이상인 경우 파생혜택(derivative benefits)을 적용하여 조약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 동등수혜자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하여 원천지국과 투자자의 거주지국 간의 조약혜택이 적용되었더라면, 투자기구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의 조약상의 혜택과 최소 동등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인(人)을 일컫음
 - 파생혜택은 투자기구의 동등수혜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기구를 조약혜택 부여 대상이 되는 ‘적격인’으로 보아 조약혜택을 적용하는 규정임
 - 비집합투자기구의 활동을 ‘능동적 사업(active business)’으로 보아 조약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최근 제시된 업계 대표가 제시한 ‘Global Streamed Fund’제도의 적절성 여부

87) <http://www.oecd.org/ctp/treaties/BEPS-consultation-treaty-entitlement-non-CIV-funds.pdf>

- 본 제도는 원천지국에서 비집합투자기구로 소득이 지급될 때 과세하지 않고 투자 기구가 최종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배분할 최종 투자자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조약혜택을 적용하여 투자기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지국에 납부하는 방법임

- PPT규정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PPT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조약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비집합투자기구의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사례에 대해 질의함
- 비집합투자기구는 PPT규정에 따라 조약혜택 부여가 제한될 수 있는바, 조약남용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적법한 사례를 OECD모델조세협약 주석서에 포함시키고자 함
- 도관 방지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비집합투자기구가 체결하는 적법한 약정이 도관약정으로 분류되어 PPT규정상 조약혜택 부여가 제한되는 사례들을 요청함
- 본 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은 2016년 4월 22일까지이며, 제시된 의견은 2016년 5월 예정된 특별위원회(Working Party 1) 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임

마.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표준 전자양식 (XML Schema)을 발표⁸⁸⁾

[조세동향 16-04호]

- OECD는 2016년 3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신속하고 일관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 전자양식(XML Schema)과 사용설명서를 발표함
- BEPS프로젝트 액션13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와 과세당국 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모든 BEPS프로젝트 참여국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규정함
- XML Schema는 전자문서의 작성과 전달을 위해 널리 쓰이는 전자매개체이며 사용설명서는 XML Schema를 활용한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함
- XML Schema는 (1) 발신 및 수신 과세당국과 보고서 유형(최초 보고서 또는 수정·보완 보고서 구분)을 포함하는 머리말(header), (2) 신고대상 기업을 비롯하여 보고서에

88)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standardised-electronic-format-for-the-exchange-of-beps-country-by-country-reports.htm>

포함되는 대상 기업 정보, (3) 국가별보고서 본문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짐

- OECD는 XML Schema가 과세당국 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장치임을 명시하였으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대상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XML Schema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음
- XML Schema를 통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 관련 기업은 IT시스템 변경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바. BEPS프로젝트 액션 13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과세당국간 다자협정에 6개국 추가 서명⁸⁹⁾

[조세동향 16-05호]

- 2016년 5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에서 캐나다, 아이슬란드,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중국 등 6개국이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과세당국간 다자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함
- 이로써 지난 1월 총 31개국이 MCAA에 처음 서명⁹⁰⁾한 이후 현재까지 총 39개국이 MCAA를 체결함
- 2016년 5월 현재 OECD국가로는 한국과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30개국이 MCAA에 서명함
- OECD국가 중 미체결 4개국: 미국, 한국, 헝가리, 터키
- 비OECD국가 중 체결 9개국: 중국, 인도, 코스타리카,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버뮤다

89) <http://www.oecd.org/tax/a-new-boost-to-transparency-in-international-tax-matters-six-new-countries-sign-agreement-enabling-automatic-sharing-of-country-by-country-reporting.htm>

90)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about-automatic-exchange/a-boost-to-transparency-in-international-tax-matters-31-countries-sign-tax-co-operation-agreement.htm>

사. 「Taxing Wages 2014~2015」 발표⁹¹⁾

[조세동향 16-05회]

- OECD는 2016년 4월 12일 “2014-2015 임금소득과세 보고서(Taxing Wages 2014-2015)”를 발표함⁹²⁾
 - 동 보고서는 OECD 34개 회원국들의 임금에 대한 조세의 산출과 조세가 개별 가구의 순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됨
-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가구형태별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음
 - 임금소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근로자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Payroll Taxes), 그 밖에 가계현금급여(Cash Family Benefits) 등이 있음
 -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독신가구, 2자녀 편부모 가구, 2자녀 외벌이 가구, 2자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 OECD 회원국의 2015년 독신가구의 평균 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포함)은 평균 35.9%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조세부담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한 반면 2014년과 2015년은 35.9%로 동일함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조세부담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국가에서의 조세부담률 하락으로 인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4개국에서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였고, 8개국에서 하락함
 - 우리나라의 독신가구의 평균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21.9%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0.19%p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조세부담 상승은 주로 소득세 부담(0.12%p 상승)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91)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ing-wages-20725124.htm>

92) 보고서의 발표일자는 2016년 4월 12일이나 실제 보고서의 가용일은 2016년 5월 중임.

- 2자녀 편부모가구(각 국가의 평균임금의 67% 소득 기준)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17.2%로 조사대상 가구 형태 중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임
 -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조세부담률이 독신가구의 조세부담률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2자녀 편부모가구의 조세부담률은 17.0%로 OECD 평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자녀 외벌이가구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7%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버는 독신가구(35.9%)보다 낮은 조세를 부담함
 - 이는 2자녀 기혼가구에 대한 유리한 소득세제도와 현금급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2자녀 기혼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9.6%로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조세부담률(21.9%)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자녀 맞벌이가구(평균 임금소득의 167% 기준)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31.0%로 2자녀 외벌이가구(26.7%)보다 더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임
 -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2차 근로자(second earner)에 대한 배우자 및 부양자 공제 등 인적공제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2자녀 맞벌이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9.5%로 2자녀 외벌이가구(19.6%)의 평균 조세부담률과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아. BEPS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OECD이전가격지침서에 반영⁹³⁾

[조세동향 16-06호]

- OECD의회는 2016년 5월 23일 BEPS프로젝트 최종보고서(액션8-10, 액션13)에 따른 기존 OECD이전가격지침서(Transfer Pricing Guidelines)의 개정을 최종 승인함

93) http://www.oecd.org/tax/oecd-council-approves-incorporation-of-beps-amendments-into-the-transfer-pricing-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and-tax-administration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Council%20approves%20incorporation%20of%20BEPS%20amendments%20into%20the%20Transfer%20Pricing%20Guidelines%20for%20Mul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5-06-2016&utm_term=demo

- 기존 이전가격지침에 대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1장 섹션D(Guidance for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전체를 삭제하고 액션 8-10(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최종보고서의 해당 내용으로 대체함
 - 제2장(Transfer Pricing Methods)의 문단 2.16에 원자재 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문단 2.16A~E 추가
 - 제2장 문단 2.9에 일반경험법칙(general rule of thumb)이 철저한 기능 및 비교분석을 대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단 2.9A를 추가
 - 제5장(Documentation) 전체를 삭제하고 액션13(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최종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함
 - 제6장(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 Property), 제7장(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ra-Group Services), 제8장(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전체를 삭제하고 액션 8-10 최종보고서의 해당 내용으로 대체함

자. BEPS프로젝트 다자간협약 관련 협의문서 발표⁹⁴⁾

[조세동향 16-06호]

- OECD는 2016년 5월 31일 BEPS프로젝트 액션15(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협약 개발)에 따른 다자간협약 개발을 위한 협의문서(discussion draft)를 발표함
 - 액션 15는 BEPS프로젝트에 따른 조세조약 관련 개정사항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개별 조세조약 개정이 아닌 다자간협약의 개발을 추진함
 - 다자간협약은 BEPS프로젝트의 액션2(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 액션6(조약남용 방지), 액션7(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액션14(분쟁해결장치)에서 제시된 조치사항들을 반영하여 기존 양자간조세조약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
 - 다자간협약 개발과 BEPS회원국들의 협약 서명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임
- 본 협의문서는 다자간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다음의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함

94)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ing-wages-20725124.htm>

- 기존 개별 양자조세조약 조항들이 BEPS프로젝트에 따라 효과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호환조항(compatibility clauses)’ 관련 문제
- ‘호환조항’은 BEPS프로젝트에 따른 새로운 조항들이 기존 양자조약 조항에 추가되거나 기존 조항을 대체하는 조항들로 새로운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함
- 새로운 조항의 일관된 적용과 해석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와 해설서(explanatory statement) 관련 문제
-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기존 양자조약을 다자간협약의 원문 언어(영어와 불어)로 개정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적용에 관한 문제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 통합개정법안 공개⁹⁵⁾

[조세동향 16-05회]

- 뉴질랜드 정부는 2016년 5월 2일 현행 세율의 유지, 소수주주회사 및 기타 개정을 포함한 통합법안⁹⁶⁾을 공개함
 - 뉴질랜드 국세청 장관은 납세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세법규정을 개선, 강화, 업데이트 하는 기술적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힘
 - 세율의 변경은 없으며, 기존 제안에 따라 소수주주회사에 대한 도관회사규정⁹⁷⁾, 비거주자 원천징수, 소비세에 대한 기술적 개정내용을 담고 있음

-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AIL(Approval Issuer Levy)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⁹⁸⁾
 - Back-to-back 대출거래와 비거주자인 그룹에 의해 제공되는 대출거래에 대해 AIL 대신 원천징수를 적용할 것을 확인함
 - AIL거래는 차입자 또는 국외 대여자 중 한 명 이상이 금융기관 또는 공개된 회사의 형태이거나, 최소 50만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이자를 비거주자에게 전기에 지급하거나 당기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만 적용함
 - 뉴질랜드 은행은 대여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AIL을 적용할 수 있음

95) New Zealand Inland Revenue(<http://taxpolicy.ird.govt.nz/news/2016-05-03-omnibus-tax-bill-introduced>).

96) The Taxation (Annual Rates for 2016 - 17, Closely Held Companies, and Remedial Matters) Bill.

97) 『조세동향』 15-10호 참조.

98) Approval Issuer Levy는 차입자가 선택적으로 원천징수 대신에 상대적으로 낮은 2%의 세율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은 0%로 적용되는데(K.J. Holmes, New Zealand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Deloitte, Tax Bill - Reforms galore, Tax Alert, May 2016).

- 소비세에 대해 일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을 담고 있음
 - 증권 발행으로 인한 자금이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을 위해 사용되면, 증권의 발행·차환 및 지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 연간 매출액 24백만뉴질랜드달러 미만의 기업 또는 개인에게 과세관청이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된 비율로 과세·면세부문의 매입세액 안분을 허용함

2 싱가포르

가. 2016 예산안 공개⁹⁹⁾¹⁰⁰⁾

[조세동향 16-04회]

-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2016년 4월 6일 의회 연설¹⁰¹⁾을 통해 예산안을 공개함
 - 예산안은 정부는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와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SG100¹⁰²⁾으로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강조되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한도 설정, 법인세환급액 비율의 인상, 각종 세제혜택을 산업지원 등의 정책과 부합하도록 연장·확대·신설함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세제혜택의 한도를 설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 방문비용 보조액에 대한 경감세율 혜택을 폐지함
 -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세제혜택의 한도를 8만싱가포르달러로 설정함
 -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 방문비용 보조금에 대한 20%의 경감세율 과세혜택을 폐지함
 - 이러한 한도 설정과 경감세율 혜택 폐지는 2018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

99) Budget 2016(http://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6/Home.aspx)

100)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Singapore-Budget/Budget-2016-Overview-of-Tax-Changes/>)

101) 2016년 3월 24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이루어진 연설임

102)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는 2015년 독립 5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독립 100주년(SG100)을 기치로 향후 50년을 계획하고 있음

-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환급액 비율의 인상, 각종 세제혜택을 정책에 부합하도록 축소 연장·확대·신설함
 - 기업(특히, 중소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016~2017년 양 과세기간에 법인세환급액 한도를 2만싱가포르달러와 법인세 납부액의 50% 중 작은 금액으로 인상함
 - 기존 2013~2015년 기간에는 3만싱가포르달러와 법인세 납부액의 30%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었음
 - 생산 및 혁신 세액공제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하되 현금환급비율을 60%에서 40%로 하향조정함
 - 기존 2016년에 일몰예정인 제도로 2018년 이후에는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인수합병의 금액한도를 2천만싱가포르달러에서 4천만싱가포르달러로 상향조정함
 - 현재 제도는 적격인수합병에 해당하면 비용의 25%를 소득공제하고, 인지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 근로자의 사회자원봉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특성기관(Institutions of Public Character)에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근로자 급여와 부대비용을 250%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
 - 공제를 위해서는 공공특성기관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당 연간 25만싱가포르달러의 한도가 제시될 예정임
- 법인세와 관련하여 금융과 해운 산업의 지원을 위해 기존의 세제혜택을 일몰연장 및 확대함
 - 금융 및 자금의 지역특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자금센터제도를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금융자금센터로부터 승인된 활동에서 발행하는 적격소득에 대한 경감세율을 8%로 인하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함
 - 금융자금센터제도는 2016년 3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며, 기존 경감세율은 10%였음
 - 싱가포르를 세계해운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승객운송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같이 열거된 소득에 비과세하는 해운산업 세제혜택의 범위를 확대함
 - 해외 에너지, 광물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보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포함됨

나. BEPS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

[조세동향 16-06호]

-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2016년 6월 16일 싱가포르는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¹⁰³⁾
- 싱가포르는 이로써 준회원국(Associate)의 지위를 통해 BEPS 프로젝트의 실행과 모니터링에 대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이를 이행할 것임
- 이러한 참여의 일환으로 싱가포르는 4가지 최소기준에 대해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함
 - 최소기준은 유해조세환경, 조약남용방지, 이전가격문서화 및 분쟁해결로 현재 싱가포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별보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3 인도

가. 2016~2017 예산안 공개¹⁰⁴⁾

[조세동향 16-03호]

- 인도 재무장관은 2016년 2월 29일 의회 연설을 통해 2016-17 예산안을 공개함
 - 내년의 주요 의제를 ‘인도의 변화’(Transform India)로 정하여 9개의 주요 부문¹⁰⁵⁾을 선정하고, 이를 변화시켜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안을 공포함¹⁰⁶⁾
 - 예산안 중 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회사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특허혜택제도의

103)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http://www.mof.gov.sg/news-reader/articleid/1659/parentid/59/year/2016?category=Press%20Release>).

104) Union Budget(<http://indiabudget.nic.in/index.asp>).

105) 9개 주요 부문은 ① 농업과 농부의 부, ② 지방부문, ③ 의료를 포함한 사회적부문, ④ 교육, 기술 및 일자리 창출, ⑤ 사회간접자본과 투자, ⑥ 금융부문개혁, ⑦ 지배구조와 사업의 용이성, ⑧ 재정준칙, ⑨ 세법개혁임.

106) Budget Speech by Hon'ble Finance Minister(<http://indiabudget.nic.in/bspeecha.asp>).

신설, 소득세의 부가세 인상, 국가별보고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법인세

- 조세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소규모 기업 및 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인하함
 - 매출액 5천만루피 미만의 국내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30%에서 29%로 1%p 인하함
 - 다만,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와 교육세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매출액 5천만루피 미만인 기업의 유효세율은 과세표준이 1천만루피인 경우 29.87%, 1천만~5천만루피인 경우에는 31.96%임¹⁰⁷⁾
 - 2016년 3월 1일 이후 설립되는 신규제조회사가 투자공제 또는 가속상각 등의 조세 혜택을 부여받지 않는 경우 25%의 법인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요구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에서 개발되고 등록된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특혜세율을 적용함¹⁰⁸⁾
- 인도에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금융서비스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 배당분배세 과세를 면제함
 - 배당분배세는 배당 시 배당하는 회사에 과세하는 것으로 세율은 15%임¹⁰⁸⁾
 - 최저한세율을 18.5%에서 9%로 낮추어 적용함
 - 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 설립된 인정된 주식거래소에서 외화로 이루어지는 주식 매각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장기자본자산의 매각차익에 대해 비과세함
 - 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 설립된 인정된 기관에서 외화로 이루어지는 실물파생상품의 매각에 대해 상품거래세를 면제함
- 주택건설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가 부동산투자개발회사 등의 사업신탁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분배세를 면제함
 - 배당분배세가 면제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이 사업신탁 등에 의해

107) PriceWaterhouseCoopers, Indian Budget 2016: Acceleration the Momentum, March 2016, p. 52.

108) S. Shah, India - Corporate Taxation sec. 3., Country Surveys IBFD.

100% 소유되어야 하며, 배분되는 배당은 이러한 소유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된 이익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함¹⁰⁹⁾

- 특정 산업 등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가상각의 특례를 확장
 - 기존 전력설비 등에 대해 20%의 추가 상각이 인정되는데, 이의 범위에 전력 전송을 위해 취득하는 설비 등을 포함함

-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가져오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 창업기업에 대해 일부 비과세기간을 적용함
 - 2019년 이전 설립되는 혁신, 개발, 신규상품의 전파 및 상업화, 지적재산권 또는 기술이 주도하는 생산 또는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적격 창업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의 공제를 허용함
 - 적격기업은 2016년부터 2019년 기간에 설립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매출액이 25천만루피를 초과하지 않으며, 정부고시에 따라 부처통합인증위원회의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임¹¹⁰⁾
 - 이러한 공제는 설립 후 최초 5년 중 연속한 3개년간 허용됨

- 적절한 유효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혜택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함
 - 재생에너지, 공해방지 등의 설비에 적용되면 가속상각비율을 80~100%에서 40%로 축소함
 - 연구활동에 적용되던 공제혜택을 200%에서 2017년부터는 150%로, 2020년부터는 100%로 축소함
 - 특별경제구역에 적용되는 비과세기간 등의 혜택¹¹¹⁾들을 2021년 이후 폐지함

2) 소득세

- 소득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를 12%에서 15%로 인상함

109) PriceWaterhouseCoopers, op. cit., p. 88.

110) PriceWaterhouseCoopers, op. cit., p. 59.

111) KPMG, Union Budget 2016(<http://www.kpmg.com/IN/en/services/Tax/unionbudget2016/Pages/default.aspx>).

- 소액납세자 등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 환급 및 공제금액의 한도를 상향조정함
 - 소득이 50만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2천루피에서 5천루피로 확대함
 -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조를 받지 않는 근로소득자의 임차료공제액을 연간 24천루피에서 60천루피로 상향조정함
- 현행 배당분배세는 차등세율이 아닌 동일세율로 과세되어 형평성에 반하므로, 이와는 별도로 높은 수준의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 기존에 배당에 대한 세제는 배분하는 회사에 배당분배세가 과세되고 지급받는 자는 과세되지 않아 배당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음
 - 이에 따라 국내회사로부터 연간 1백만루피를 초과하는 배당을 수령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과세함

3) 간접세

- 농업산업의 지원과 농가에 종사하는 인력의 부를 증대하기 위한 재원을 위해 모든 서비스에 대해 추가세(Krishi Kalyan Cess)를 부과함
 - 이로 인해 유효 서비스세율이 현행 14.5%에서 15%로 인상됨

4) 국제조세

- 법인의 거주자 판정기준인 효율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OEM) 기준의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함
 - 이러한 POEM은 2015년 예산안에서 도입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OECD BEPS Action 13에 따라 국가별보고와 마스터파일의 보고 의무를 부여함
 - 연결매출액 75천만유로 이상의 기업들에 의무가 부여됨
- 국외 전자적 상업거래 회사의 인도 내의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평등화부과금(equalization levy)을 신설함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1만루피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6%를 평등화부과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 다만, 이러한 부과금은 B2B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
- 부과금이 적용되는 용역은 온라인광고, 디지털광고공간의 제공 등의 광고용역에 적용됨¹¹²⁾

나. 비상장증권에 대한 소득구분지침 공개¹¹³⁾

[조세동향 16-05호]

- 인도 과세관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은 2016년 5월 2일 비상장증권에 대한 소득분류지침을 공개함
 - 이 지침에서는 비상장증권의 양도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함
 - CBDT는 2016년 2월 지침을 통해 상장증권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보유시 납세자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사업소득 vs 자본소득)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지침을 공개하였음
 - 이러한 지침은 증권에 대한 소득구분에 있어 쟁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완화하고 세무조사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다. 조세회피 제보자에 대한 보상지침 공개¹¹⁴⁾

[조세동향 16-05호]

- 인도 재무부는 2016년 4월 29일 조세회피 제보자에 대한 보상지침을 공개함
 - 직접세는 추가 과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5백만루피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112) Ernst & Young, Budget Connect 2016, 2016, p. 38.

113)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 Department of Revenue(CBDT), Subject: - Consistency in taxability of income/loss arising from transfer of unlisted shares under Income-tax Act, 1961-regd.-, 2nd of May, 2016.

114)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http://pib.nic.in/newsite/erelease.aspx?relid=0>).

- 간접세는 순매출액의 20% 또는 회피된 서비스세와 관련된 가산세 등의 합계액까지 보상할 수 있음

라. 외국법인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기준 공개¹¹⁵⁾

[조세동향 16-06호]

- 인도 재무부 등은 2016년 5월 23일 자산의 간접적 이전시 공정가치의 결정방법과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초안을 공개함
 - 이 지침은 지분 등을 통한 인도 내 자산의 간접적 이전 시 인도에서 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인 대상회사 자산의 공정가치의 50% 초과규정에 적용되는 공정가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도 내 자산현황에 대한 전자적 보고양식 및 간접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90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16년 5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
- 외국회사 등의 지분양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도 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의 총 자산 중 공정가치의 50%가 인도에 소재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인도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 인도 상장회사 지분의 경우 지분의 공정가치는 시장의 관측가격이며, 경영권이 양도 되는 경우에는 관측가격에 부채의 장부가액을 가산함
 - 관측가격은 이전이 이루어진 기간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등의 이전 6개월 및 2주간 주별로 종가의 최고·최저가의 평균 중 큰 금액임
 - 인도 비상장회사 지분의 경우 은행가·회계사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함
 - 여타 자산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매각한다면 획득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은행가·회계사 등에 의해 결정됨

115) Government of India - Ministry of Finance, Manner of determination of fair market value and reporting requirement for Indian concern-Indirect transfer provisions-section 9(1) of the Income-tax Act, 1961-Draft Rules-reg., F No 142/26/2015-TPL, Dated 23rd May, 2016.

- 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전체 자산 중 인도내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함

다. 모델 소비세법 공개¹¹⁶⁾

[조세동향 16-06회]

- 인도 재무부는 2016년 6월 14일 모델 소비세법을 공개함
 - 모델 소비세법은 재화와 서비스 세법(Goods and Service Tax Act, 2016: GST)과 통합 재화와 서비스 세법(The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Act, 2016: IGST) 두 가지가 공개됨
 - 전자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관할의 소비세 부과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국가간 거래 등에 대한 소비세를 다루고 있음
 - 모델 소비세법은 소비세 시행을 위한 초안으로 상원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¹¹⁷⁾ 현행 여러 소비세를 통합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GST는 25개의 장과 4개의 별표로, IGST는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소비세법 제정시 기초가 될 것임
 - GST는 정의, 공급의 의미 및 범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세절차, 부과 및 면제,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환급 등 소비세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
 - IGST는 국가간 거래에서의 공급원칙, 과세 및 징수, 공급장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모델 소비세법을 기초로 소비세법을 제정할 예정¹¹⁸⁾

116) Model GST Law empowered Committee of State Finance Ministers June, 2016.

117) 『조세동향』 14-12호 참조.

118) EY - GST News Alert, Ministry of Finance releases Model Law of GST Bill in the public domain, 14 June 2016, p.1.

4 일본

가. 2016 세법개정안 각의 결정¹¹⁹⁾

[조세동향 16-01호]

- 일본 각의(閣議)는 2015년 12월 24일, 2016 세법개정안을 승인함
 - 세법개정안은 현행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성장지향적인 법인세 개혁,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 고려, 저출산대책·교육여건 증진·지역개발과 더불어 국제기준에 적합한 과세규정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법인세율의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조정, 새로운 이전가격문서화, 소비세율의 경감세율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개정안은 2016년 3월 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입법될 예정임

1) 법인세

- 법인세율과 지방세인 법인사업세율을 인하하고, 지방법인 특별세를 폐지함
 - 대기기업의 세율을 현행 23.9%에서 2016년 23.4%, 2018년 23.2%로 인하함

〈표 III-1〉 일본의 법인세율

		현행	개정안	
			2016.4.1.~2018.3.31.	2018.4.1.이후
일반법인		23.9%	23.4%	23.2%
중소기업	소득 8백만엔 이하	19.0% (경감세율 15.0% ¹⁾ 적용)	19.0% (경감세율 15.0% ¹⁾ 적용)	19.0%
	소득 8백만엔 초과	23.9%	23.4%	23.2%

주: 1)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은 2017년 4월 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조세동향』 2015-01 참조)

자료: KPMG, "Outline of the 2016 Tax Reform Proposals," 18 December 2015, p. 2

119) 財務省, 「平成28年度 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 12月 24日 閣議決定

- 법인사업세(지방세) 세율을 2015년과 2016년에 순차적으로 인하함

〈표 Ⅲ-2〉 일본의 지방 법인세 표준세율(소득기준의 경우)

소득기준	현행	개정안
연 4백만엔 이하	3.1%(1.6%)	1.9%(0.3%)
연 4백만엔 이상 8백만엔 미만	4.6%(2.3%)	2.7%(2.7%)
연 8백만엔 초과	6.0%(3.1%)	3.6%(0.7%)

주: 괄호안 세율은 지방법인 특별세 등에 관한 잠정조치법 적용 후 세율로 특별지방법인이 과세종료되는 2017년 4월 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자료: 財務省, 「平成28年度 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 12月 24日, p. 42, 재구성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율을 기간별로 조정함
 - 현행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65%로, 이후 기간은 50%로 되어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율을 2016년 60%, 2017년 55%로 조정함

〈표 Ⅲ-3〉 일본의 이월결손금 공제율

	현행	개정안
2015.4.1. ~ 2016.3.31	65%	65%
2016.4.1. ~ 2017.3.31		60%
2017.4.1. ~ 2018.3.31	50%	55%
2017.4.1.~		50%

자료: 財務省, 「平成28 年度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 12月 24日, p. 41, 재구성

- 이외에 법인세와 관련하여 특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선택 폐지, 세제혜택의 일몰에 따른 종료,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건물부속설비 및 구조물에 대해 적용되던 가속상각법을 폐지하고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함
 - 다만, 광업용자산은 기존의 생산량 비례법 적용 가능
 - 생산성향상시설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¹²⁰⁾를 기한 연장하지 않고 2017년 일몰시기로 함

120) 『조세동향』 13-10호 참조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산정 특례¹²¹⁾를 2년 연장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함

2) 소비세

- 소비세율을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세율로 구분함
 -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8%의 경감세율을 2017년 4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함
 - 일본은 2017년부터 소비세 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음¹²²⁾
 - 경감세율은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과 정기구독계약이 체결된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에 적용됨

〈표 III-4〉 일본의 소비세율

	현행	2017.4.1.~
소비세율	8% (단일세율)	8% (경감세율)
		10% (표준세율)

자료: 財務省, 「平成28年度 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 12月 24日, p. 61, 재구성

3) 국제조세

- OECD BEPS Action 13에 따라 이전가격 관련 문서화 보고를 도입함
 - 다국적기업 및 이에 속한 법인 등은 국가별 보고, 사업개황 보고(마스터파일), 독립 기업거래가격 산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국가별 보고, 마스터파일은 2016년 4월 1일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로컬파일은 2017년 4월 1일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관련 문서를 7년간 보존하도록 함

121) 『조세동향』 13-02호 참조

122) 『조세동향』 15-01호 참조

나.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

[조세동향 16-06호]

- 일본 총리는 2016년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의 인상을 다시 연기하겠다고 밝힘¹²³⁾
 - 2017년 4월에 현행 8%의 소비세율을 10%로 인상 및 경감세율을 신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019년 10월로 연기하는 것임¹²⁴⁾
 - 소비세율의 인상은 최초 2015년 10월 인상에서 2017년 4월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것으로¹²⁵⁾ 이번에 다시 연기함
 - 이는 저유가 등으로 인한 세계적 수요 감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세율 인상이 내수 침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총리와 기자 간의 문답에서 기존의 인상시점 재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연기된 2019년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확신 여부, 사회복지수요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제기됨

5 중국 - 영업세에서 증치세로의 완전한 전환 결정 공개

[조세동향 16-03호]

- 중국 총리는 2016년 3월 5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영업세에서 증치세로의 전환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¹²⁶⁾
 -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強)은 전인대 연설에서 모든 산업에 증치세를 적용하기 위해, 현재 영업세가 적용되는 건설, 부동산, 금융 및 소비자서비스 분야에 금년 5월 1일부터 증치세를 과세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중국의 영업세에서 증치세로의 전환을 위한 과거 5년간의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증치세가 적용되고 영업세는 폐지되는 것을 의미함¹²⁷⁾

123) 首相官邸(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6/0601kaiken.html).

124) 『조세동향』 16-01호 참조.

125) 『조세동향』 14-12호 참조.

126)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npc.gov.cn/englishnpc/Speeches/2016-03/18/content_1985677.htm).

- 이후 중국 과세관청에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증치세 전환 방법 및 계획 등을 공개하고 있음¹²⁸⁾
- 새로 적용되는 산업에 대한 과세수준은 총영업세의 약 80% 수준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전환은 약 1천만명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함
- 각 산업에 대한 세율은 건설과 부동산 11%, 금융과 소비자서비스 6%로 밝힘
 - 그러나 아직 금융분야에 대한 증치세 적용방법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
- 과세관청은 빠른 시일 내에 증치세에 대한 관련 규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힘

6 호주

가. 국가별 보고 지침 공개¹²⁹⁾

[조세동향 16-01호]

- 호주 과세당국은 2015년 12월 17일 국가별 보고에 대한 지침을 공개함
 - 지침은 납세자들에게 신설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 중 이전가격문서화와 관련된 국가별 보고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내용 중 OECD Action 13에 따른 이전국가문서화인 국가별 보고의 적용이 포함되어 있음
 - 지침은 국가별 보고의 대상과 면제, 보고방법, 보고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룹 연간 매출액 10억호주달러 이상인 글로벌기업은 원칙적으로 보고대상이 되나, 보고대상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OECD는 매출액 7억 5천만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면제규정을 두지 않도록

127) KPMG, "China's Value Added Tax expanded to fully replace Business Tax in major new announcement," China Tax Alert, March 2016, p. 1.

128) China(People's Rep.) - Transformation from business tax to VAT (21 Mar. 2016), News IBFD, 國家稅務總局稅務要聞, 王軍接受記者採訪回應營改增熱點問題, 2016年03月13日.

129) Australian Taxation Office, Subdivision 815-E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ountry-by-Country reporting, Law Companion Guideline LCG 2015/3, 2015.12.17.

- 권고하고 있으나, 호주 과세관청은 대상자가 서면으로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내용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거래의 규모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기업의 위험요소 평가
 - 기업의 협력부담 정도
 - 과세관청이 정보교환 등을 통해 관련 보고를 다른 방식을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예를 들어 글로벌기업이 국외거래가 없는 경우,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부펀드 등이 이러한 보고의무면제에 해당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이 면제 자체의 적용은 부적절하지만 납세자의 신청사유에 일부 고려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소화된 로컬파일 양식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면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고는 해당 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승인된 양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고 내용은 OECD 지침 등에 따라 비공개되나, 호주 정보교환약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 제공될 수 있음
- 국가별 보고의 작성이 보고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과세관청에 통보해야 함
- 이러한 경우는 모회사가 국가별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데, 보고면제 등을 포함한 대안을 과세관청과 논의하여야 함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별 보고와 마스터파일만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로컬파일은 별도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과세관청은 로컬파일에 대해 위험평가와 협력부담을 고려하여 3가지 형태의 승인된 양식으로 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OECD 지침에서 요구하는 3가지¹³⁰⁾ 모든 사항을 담은 완전한 로컬파일, 모든 사항을 포함하나 정보 정도가 낮은 간소화된 로컬파일, 요구사항 중 첫 번째 사항만을 포함한 요약 형태의 로컬파일로 구분됨

130) 3가지 사항은 OECD Action 13 Annex II에 기술되어 있는데 Local entity, Controlled transactions, Financial information임

나.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도입¹³¹⁾

[조세동향 16-03회]

- 호주 연방정부는 2016년 2월 22일 외국투자자들의 국내 신규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규정을 공개함
 - 이러한 요구사항은 기업들이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기소, 벌금 및 가능하다면 호주자산의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추가된 요구사항은 기존의 국익규정(national interest test)에 부가하여 국내세법 준수, 정보보고, 연차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국익규정에 부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8가지의 이행사항과 유의적인 위협이 식별되는 경우 2가지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기존의 국익규정은 국가안보, 경쟁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의 특성,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었음
 - 새롭게 도입된 일반적 요구사항은 총 8가지로 투자신청자와 이의 관계회사에 대해 호주세법에 따른 납세와 관련된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투자신청자는 호주세법을 준수하고, 이의 관계회사도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
 - 투자신청자는 호주 과세관청이 세법적용 등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의 관계회사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
 - 투자신청자는 이전가격규정 또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 및 약정을 실행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의 관계회사도 동일하게 통보하도록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
 - 투자신청자는 조세채무의 납부 의무를 충실이 이행해야 하며, 이의 관계회사도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
 - 투자신청자는 이러한 조건의 준수와 관련하여 연차보고서를 국외투자심사위원회

131) Treasur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10-2016/>).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제출해야 함

- 유의적인 위험이 식별되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함
 - 투자신청자는 조세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조세채무의 예측치를 포함한 기간별 자료를 제공해야 함

다. FATCA와 CRS 관련 금융계좌 정보교환에 대한 지침 공개¹³²⁾

[조세동향 16-04호]

- 호주 과세관청은 2016년 4월 7일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에 따른 지침을 공개함
 - 지침의 목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과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과의 상호관계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으로는 CRS에 따른 식별 계좌의 확대, 보고시기 등을 다루고 있음
- CRS의 정보교환 시행은 금융기관에 현행 FATCA 이상의 이행의무를 부여하게 되며, FATCA에 따라 미국 보고계좌로 보고되면 CRS에 따른 보고가 요구되지 않음
 - CRS의 포괄적 접근방법은 금융계좌 식별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FATCA 교환대상 배제 금융계좌의 최소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포괄적 접근방법은 정보교환체결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주지 관할국을 식별하는 것으로, 호주는 정보교환협정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러한 방법을 채택함
 - 예를 들어, 2만 5천호주달러 미만의 개인금융계좌는 FATCA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CRS 시행 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법인계좌도 동일하게 보다 낮은 수준인 CRS기준(25만호주달러)으로 적용하여야 함
 - FATCA는 관련 기업계좌의 검토를 6개월 내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국 보고계좌는 검토가 이루어진 연도 이후의 7월 31일(CRS보고)에 별도의 보고가 요구되지 않음

132)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to.gov.au/General/International-tax-agreements/In-detail/International-arrangements/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guidance-material/?page=1#1_4_Implementation_timelines).

라. 완화된 이월결손금 공제규정 개정안 공개¹³³⁾

[조세동향 16-04호]

- 호주 재무부는 2016년 4월 6일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완화된 접근방법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공개함
 - 개정안에서는 기존 동일사업기준(the same business test: SBT)을 보충하는 완화된 유사사업기준(the similar business test)을 도입함
 - 현행 규정에서는 소유의 연속성 기준(the continuity of ownership test)과 동일사업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음
 - 이 개정안은 2016년 4월 22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15~2016년 기간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적용됨

- 현행 SBT기준에서 매우 제한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의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더라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인 유사사업기준을 추가함
 - 현행 SBT기준에서 새로운 거래 또는 사업활동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함
 - 이러한 SBT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비해 너무 제한적이어서 성장하는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더하여 대부분 ‘유사사업기준’을 신설하면서, 이의 기준으로 질적인 요소를 제시함
 - 수익창출에 유사한 유·무형의 자산을 사용하는 정도, 유사한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정도, 기업의 변경이 유사한 환경에 처한 기업들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정도의 것인지 여부 등의 요소를 포함함

마. 상원 경제위원회, 법인세회피에 대한 보고서 공개¹³⁴⁾

[조세동향 16-05호]

- 호주 상원 경제위원회는 2016년 4월 22일 법인세회피에 대한 보고서인 ‘Gaming the

133)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au/Policy-Topics/Taxation/NISA/Access-to-company-losses>).

134) The Senate,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Corporate tax avoidance: Part II Gaming the system, April 2016.

System'을 공개함

- 이 보고서는 호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세회피와 공격적 조세 최소화 전략에 대해 청문회 등을 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이전가격과 과도한 부채조달에 특히 초점을 두면서 정보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행 세법체계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지속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음
- 청문회에서는 공격적 이전가격, 과도한 부채차입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왔음
 - 최근의 BEPS와 관련된 이전가격 관련 법령 개정에도, 현행 이전가격체계는 호주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납세를 부여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론 내림
 - 호주의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보다 부채에 따른 공제를 위해 과도한 내부차입약정이 사용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림
- 공격적 조세환경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운용을 위해 위원회는 여러 권고안을 제시함
 - 정부가 조세위원회에 자발적 조세투명성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청했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적 정보제공 제도를 수립하도록 권고함
 - 비상장회사의 조세투명성 관련 규정의 적용이 1억호주달러에서 2억호주달러로 변경되었는데, 위원회는 이전의 1억호주달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개정할 것을 권고함
 -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적어도 매년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세무조사 및 조세분쟁, 결정된 사건, 승소한 법적 쟁송 등의 통계와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배치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이외에도 위원회는 더 많은 분야에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고려함
 - 유의적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일반목적회계에서 보다 폭넓은 공적이익을 고려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정하고 글로벌 기업의 호주 내 활동 자료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함
 - 현행 이전가격원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호주 세수를 잠식하는 행동을 방지하지 못하는 이전가격 규정에 대해 개정할 것을 고려함
 - 회사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파나마 폐이퍼로부터 발생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9월까지 청문회 기간을 연장함

바. 2016~2017 예산안 공개¹³⁵⁾

[조세동향 16-05호]

- 호주 재무장관은 2016년 5월 3일 의회 연설을 통해 2016-17 예산안을 공개함¹³⁶⁾
 - 예산안은 일자리와 성장, 과세체계의 문제 해결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정부의 의무이행, 재정균형의 세 가지 목적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함
 - 조세와 관련하여 법인세율의 순차적 인하, 조세회피방지의 강화, 우회수익세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

1)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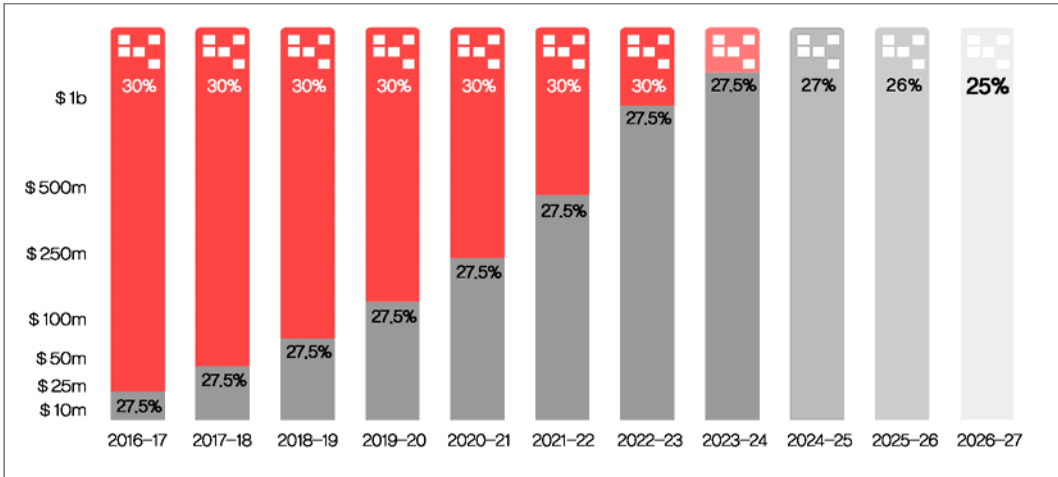
- 호주의 투자유인을 강화하고 산업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장기적으로 인하함
 - 2017년 7월부터 연매출 1억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30%에서 27.5%로 인하함
 - 이러한 인하는 매출액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장기적으로 향후 10년 내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으로 계획함

135) Budget 2016-17 Making our tax system more sustainable.

136) Budget Speech 2016-17

(<http://www.budget.gov.au/2016-17/content/speech/download/Budget-Speech.pdf>).

[그림 III-1] 호주의 향후 10년간 법인세율 변화



자료: Budget 2016~2017 Making our tax system more sustainable, p. 17.

-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조세회피TFT의 신설 및 조세투명성제도, 새로운 내부제보자보호 제도, 잠재적 조세회피 공시제도, 강화된 가산세를 도입함
 - 다국적기업과 고자산가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TFT를 구성함
 - 연간 매출 1억호주달러 이상의 기업들에 폭넓은 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세투명성제도를 채택하도록 하는 권고제도를 신설함
 - 과세관청에 제보하는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 정보공시를 개선하고, 잠재적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의견수렴을 할 계획임
 - 연간매출 1억호주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해 세무신고 및 이와 유사한 납세의무 불이행 시 최대 가산세한도를 45백호주달러에서 45만호주달러로 상향조정함

- 호주로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기구의 새로운 형태로 회사형 CIV(Collective Investment Vehicle)과 유한책임형 CIV 제도를 도입함
 - 이는 CIV를 도관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아시아지역펀드패스포트를¹³⁷⁾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제도 도입임¹³⁸⁾

137)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서명」, 2016.4.28.)

2) 개인소득세

- 중간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3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함
 - 기존에는 32.5%의 세율이 적용되던 최대 과세표준 8만호주달러를 8.7만호주달러로 2019~2020 과세연도까지 상향조정함

〈표 III-5〉 호주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호주달러, %)

세율	현행	2016.7~
-	~18,200	~18,200
19	18,201~37,000	18,201~37,000
32.5	37,001~80,000	37,001~87,000
37	80,001~180,000	87,001~180,000
45	180,001~	180,001~

자료: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및 Budget 2016-17 Making our tax system more sustainable, p.14.

3) 국제조세

- 다국적기업의 호주에서의 납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우회수익세를 도입할 예정임
 - 우회수익세는 기존의 다국적조세회피방지법(Multinational Anti-Avoidance Act)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임¹³⁹⁾
 - 우회수익세는 호주 내에서 거래를 수행하여 소득을 창출함에도 경제적 실질이 없는 형식의 거래를 통해 호주 내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 2017년 7월 1일부터 별도의 40%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국가 간 부채·자본의 세제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전가격규정을 업데이트할 예정임
 - 혼성불일치방지규정은 부채와 자본 및 이에 대응되는 이자와 배당의 분류 불일치를

138) PriceWaterhouseCoopers, 2016-17 Australian Federal Budget: Reform to perform, 4 May 2016, p. 27.

139) PriceWaterhouseCoopers, 2016-17 Australian Federal Budget: Reform to perform, 4 May 2016, p. 9.

통한 이자비용과 배당면세를 방지하는 것¹⁴⁰⁾으로 2018년 1월 또는 승인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이전가격규정은 특히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격결정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계약의 실질에 중요성을 두는 것으로 최근의 OECD지침 개정¹⁴¹⁾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것임

사. 전자화폐에 대한 과세여부 답변 공개¹⁴¹⁾

- 호주 재무부는 2016년 5월 5일 전자화폐에 대한 상원 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답변을 공개함
 - 호주 상원 경제위원회는 2015년 8월 전자화폐 과세정책에 대한 검토보고서¹⁴²⁾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호주 정부는 전자화폐를 통화로 간주하여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힘
 - 호주 과세관청은 2014년 8월의 과세지침에서는 전자화폐를 재화로 간주하여 교환 거래에 따른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음¹⁴³⁾
 - 이외에 전자화폐에 대한 국제적 추세의 지속적 모니터링, 디지털 경제 TTF 구성, 디지털화폐의 자금세탁방지/공중협박자금 적용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는 데도 동의함

7 홍콩 - 2016~2017 예산안 공개¹⁴⁴⁾

[조세동향 16-03호]

- 홍콩 재무장관은 2016년 2월 24일 예산안 연설을 통해 2016-17 예산안을 공개함
 - 이번 예산안은 홍콩의 경제개발과 재정건전성을 유지,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경제 변동성에 대응, 일자리 보호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함

140) 『조세동향』 16-01호 참조.

141)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au/PublicationsAndMedia/Publications/2016/Gov-Response-Digital-Currency>).

142) 『조세동향』 15-08호 참조.

143) 『조세동향』 14-09호 참조.

144) The 2016-17 Budget(<http://www.budget.gov.hk/2016/eng/index.html>).

-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홍콩 경제의 기반 강화, 국민생활의 증진 및 취약계층의 보호, 모든 산업에서의 공정경쟁, 기회의 균등 및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일부 감면, 개인의 각종 소득공제 상향조정, 재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업 및 개인의 세부담의 감소 및 단기 경기축진과 동시에 정부재정을 고려한 수준에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해 일시적인 세액감면을 실시하고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함
 - 2015~2016 과세기간에 대해 2만홍콩달러를 한도로 세액의 75%를 감면함
 -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감면을 일시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매년 일시적 감면을 부여하고 있음¹⁴⁵⁾
 - 기본공제와 외부모공제를 현행 120천홍콩달러에서 132천홍콩달러로, 기혼자공제를 240천홍콩달러에서 264천홍콩달러로 상향조정함
- 재산세에 대해 2016-17기간 모든 분기에 각 재산과세표준 건당 1천홍콩달러의 한도를 설정함
 -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5%의 세율로 부과되나¹⁴⁶⁾, 이를 통해 과세한도를 정함

145) 『조세동향』 15-03호 참조.

146) KPMG, Hong Kong Budget Summary, 24 February 2016, p. 12.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년 제1호

2016년 7월 30일 인쇄

2016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 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